政策協議會시리즈13 1982. 10

# 農水産物 關稅政策의 調整方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 圆圈

### 머 리 말

이 책자는 지난 10월 19일 當研究院이 주최한 農水産物關稅政策協議 會에서 발표된 主題와 討議內容을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政策當局에서 關稅率을 調整하기 위한 實務作業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열렸던 本協議會는, 하나의 政策試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당 분야 專門家의 의견을 收斂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것이었다. 본래 의도하였던 品目別 關稅率에 대한 구체적인 討論까지 誘導되지 못했던 것은 關稅率 자체가 지나는 高度의 專門性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關稅政策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基本的인 農政目標의 問題에 論議의 초점이 모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진지한 討論過程에서, 農産物輸入政策내지 農業政策 全般에 걸쳐 專門 家들의 意見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개진되었기 때문에 이 分野에 관심 있는 분들께 參考資料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討議內容을 收錄하였다.

1982 . 11 . 3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甫 炫

# 圓團

## 月 次

머		리	1	말													
主	題	發	表														
	農水	(産物	別解	稅政	策調	整方	向	 • • • • •	 	• • • • •		•••••	••••	• • • •	• • • • • •	• ]	l
討		議	•••					 •••••	 ••••		••••	••••	••••	••••	••••	• 4 ]	ł
附		録															
	1 .	胂	會	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9
	2 .	參加	]者	名單		• • • • • •		 ••••	 				<b>.</b>			10	1

# 圆圈

#### 主題發表

### 農水産物 關稅政策 調整方向

#### 1. 背 景

- 研究界의 一角에서 農水産을 포함한 全品目에 均一關稅制度를 適用 하자는 提案이 抬頭됨.
- 農産物 輸入은 經濟發展過程에서 落後된 農業分野에 生産基盤 萎縮 과 價格下落 그리고 農家所得 減縮을 誘發시켜 全體國民의 4분의 1 에 해당하는 農民들의 反撥이 큼.
- 그러나 關稅政策當局의 입장에서는 그간의 經濟與件變化에 따른 調整이 불가피한 實情임.
- 當研究院의 입장에서는 關稅政策이 農業分野에 미치는 衝擊을 重視, 農業의 發展的인 次元에서 關稅政策調整에 따른 問題點을 부각시키고 合理的인 對策을 提示하여 關稅當局으로 하여금 여러 측면에서 검토 할 수 있도록 機會를 만들고자 함.

#### 2. 目 的

이 資料는 韓國農業의 發展段階의 農産物 開發政策의 現況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問題點을 부각시킨 다음 調整方向에 관해서 各界의 討論을 誘導하는 것을 目的으로 함.

#### Ⅱ. 農業의 發展段階와 保護水準

#### 1. 韓國農業의 發展段階와 轉換期 農業

#### 가. 農業發展段階別 10 大特性

	一般特性	靜態狀態	轉換段階	動態的發展段階
1	價值基準,態度, 動機	否定的,抵抗的	部分否定과 肯定	肯定的,受容的
2	生產目的	家族消費와 生計 維持	家族消費斗 市販 混合	所得增加의 利 潤極大化
3	意思決定過程의 本質	傳統的이거나 一部 合理性	局部的인 合理性	合理的이거나 選 擇的
4	技術狀態	革新이 없는 靜 態	被動的인 技術受容	動態的이며 急速한 革新
5	農産物의 商品化率	自給自足 또는 一部 商品化	折半이상의 商品 化	完全商品化
6	生產要素의 購入比	家族勞動,自家調達	部分購入	完全購入
7	生產要素	對資本 高勞動比, 低勞動報酬	對資本 中勞動比, 中勞動報酬	對資本 低勞動比 <b>,</b> 高勞動報酬
8	農業支援機關	不充分하고 不 完全	非効率的	充分하고 効率 的
9	遊休支援機關	豊富	普 通	稀少
10	對 GNP 農業部門 比重	큼	普通	적 음

註: Clifton R. Wharton, Jr., ("Research on Agricultural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Farm Economics 45, December 1963, p. 1162)의 區分에 기초하여 作成함.

○ 商品化率: 50~70%

○ 生産要素의 購入比(農業經營費 중 現金支出 比率)

1965: 59.2%

1970 : 61.4%

1975 : 64.4 %

1981: 72.0%

o 對GNP 農林水產業의 比重

1965 : 42.9 %

1970: 30.4%

1975 : 24.9 %

1981 : 18.3 %

#### 나. 轉換期 農業의 特性

轉換期 農業의 定義:自給自足的인 生計農業으로부터 所得增大 및 利潤追求를 위한 장사 농업으로 바뀌는 過渡期的 農業

○ 農村勞動力의 質的 低下:老齡化,婦女化 → 他產業으로 移動困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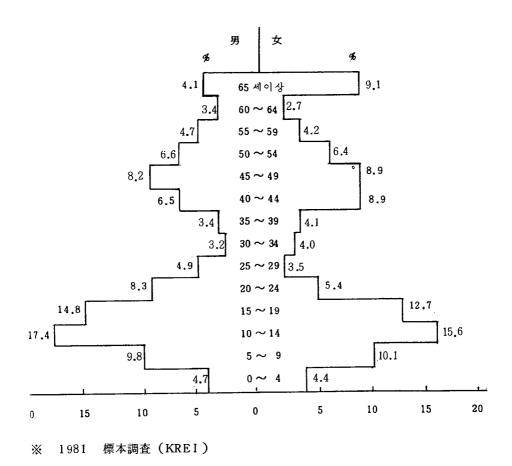
#### 〈農業勞動力의 老齡化・婦女化〉

單位:% \_\_

年 度	14~29歲	30~49歳	50 歲以上	男	女
1965	40.9	40.9	18.2	61.7	38.3
.1970	32.6	47.3	20.1	58.4	41.6
1975	30.4	43.4	26.2	58.5	41.5
1980	20.5	47.2	32.3	52.7	47.3

註: 14~50歲의 人口에 대한 比率

#### 〈1981年 農家人口 構造〉



- 都市化・工業化에 따른 住宅,工場,道路用 등土地需要急增으로 農耕地 減少[232萬ha(1968)→220萬ha(1980)]
- o 零細農耕地와 資本蓄積의 缺如로 營農機械化 不振 및 過剩投資 現象

#### ο 農産物의 需給不安定

單位:千%,%

					<b>単</b> 位	:十%,%
品	名	國內生產量 (1979)	國內消費量 (1979)	自給率(1979)	生產增加率 (1965~78 年 平均)	消費增加率 (1970~80 年 平均)
					1 1237	1 1237
穀	類	7,476	12,732	58 7		
•	쌀	5,767	6,760	85.8	3.3	1.7
보	리 쌀	1,508	1,289	117.0	- 1.2	- 9.1
1	밀	42	1,741	2.4	-11.1	3.6
호 :	수 수	149	3,029	5.0	0.3	-
ŝ	콩	293	675	43.4	4.7	5.3
薯	類	1,971	1, 972	99.9	- 4.3	- 3.4
菜	蔬	8,180	8,165	100.2	14.7 *	10.4
果	實	857	877	97.7	13.2 *	7.1
肉	類	493	523	94.3		
쇠	고 기	86	114	75.4	0.7.*	13.3
돼지	고기	223	226	98.7	14.2	
닭 :	고 기	90	90	100.0	8.7	
鷄	卵	243	244	99.9		
牛	乳	381	374	101.9		25.1
魚	貝	2,162	1,573	137.4		8.3
油 脂	類	103	201	51.2		

<sup>\* 1975~80</sup>年間 年平均値임.

#### ○ 農産物 價格의 不安定

<主要 農產物 價格의 季節變動指數, 195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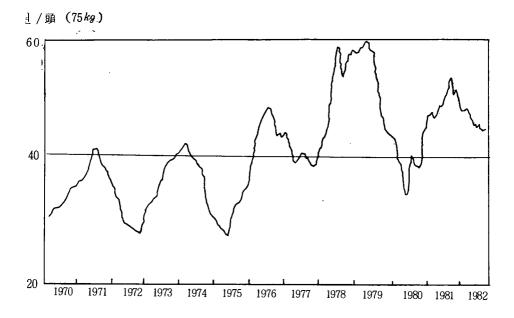
ы	-	乖	<sub>最</sub> 高 價 格	乖	<b>是 低 價 格</b>	振幅係數*	
品	目	月	季節變動指數	月	季節變動指數	派 幅 床 数	
Ų	<u>ş</u>	7	105.29	12	93.91	12.1	
마	늘	5	113.24	7	84.50	34.0	
야	파	4	126.82	7	66.50	90.7	
사	과	6	123.41	11	87.66	40.8	
H,	A	6	115.21	10	88.43	30.3	

### 

#### <農產物價格의 週期變動>

品目	變 動 週 期 年)	品	<u> </u>	變動週期年
쌀	5, 10	참	깨	2, 5
· 보 리	3, 10	무	우	2
밀	10	배	추	2
콩	2.5	사	과	2.5, 5
감 7	<b>5,</b> 10		배	3.5, 10
고 구 ㅁ	ት 5, 10	한	우	4.5, 10
코 출	5	육	돈	2.5
च} र्	3, 5	육	계	3,5, 10
्रे प्र	4 2.5, 3	계	란	6個月,1,2.5,3,4,10

#### 〈돼지 農家販賣實質價格의 週期變動, 1970~82〉



○ 1978 년 이후 農業分野에 대한 比較優位論에 기초한 農業開放論 擡頭

#### 다. 轉換期農業의 問題點

- ㅇ 傳統的인 農業을 商業農으로 誘導하기 위한 政策調整의 缺如
- 西歐諸國이 轉換期農業에 直面했을 때와 같은 農業投資、擴大 가 缺如 됨.

<農水產業에 대한 開發費의 比重>

年 度	農水產部門開發費 (10억원)	全體開發費에 대한 比 重 (%)	GNP
1962	7.9	29.0	36.7
1967	20.0	25.3	30.1
1972	198.4	19.4	23.0
1979	273.2	12.0	20.6
計 1982~1986 <sup>*</sup>	6,800.0	9.4	14.8

\* 開發費는 農林水產業 및 鑛業을 포함하고 있음.

#### ○ 農業成長率의 低位

〈期間別 成長率〉

單位:%

期間	GNP	農業	非農業	人口
1953 ~ 1961	3.6	2.1	4.4	3.1
1962 ~ 1971	8.7	3.7	11.5	2.5
1972 ~ 1979	10.4	4.3	11.7	1.7
$1982 \sim 1986^{1}$	7.6	2.6	10.8	1.5
1979 ~ 1991 <sup>2</sup> )	-	3.2	-	_

註:1)5次5個年 計劃임.

2) KRE I 推定値임.

#### ○ 農產物 自給率의 下落

單位:%

穀	種	別	1965	1970	1975	1980	1981 (잠정)
全		體	93.9	80.5	73.0	54.3	44.3
	쌀		100.7	93.1	94.6	88.8	70.3
보.		리	106.0	106.3	92.0	57.6	72.7
	밀		27.0	15.4	5.7	4.8	2.7
옥	수	수	36.1	18.9	8.3	5.9	6.1
	콩		100.0	86.1	85.8	35.1	29.7
薯		類	100.0	100.0	100.0	100.0	100.0
쇠	고	기	100.0	100.0	100.0	93.3	74.3
돼	지 고	기	100.0	100.0	100.0	97.2	99.7
닭	-37_	기	100.0	100.0	100.0	99.3	100.5

資料;農水產部

#### ○ 都・農間의 所得隔差

〈都農間 家口 및 1人當 所得의 比較・1970~ ぬい 単位:千원

7 HP /500	151 秋日	_	八田	171141	<b>儿牧,</b> 1	. 310	00/		
	_ 名	目 所	得		實	質	所	得 <b>*</b>	
年 度	F	盲	<u> </u>	戶	當當		1	人	當
	農家(A)	都市(B)	A/B	農家(C)	都市(D)	C/D	農家(E)	都市(F)	E/F
	•		%			%			%
1970	255.8	381.2	67.1	580.0	776.4	74.7	98.0	145.4	67.4
1971	356 <b>.</b> 4	451.9	78.9	715.7	811.3	88.2	122.8	153.7	79.9
1972	429.4	517.4	83.0	761.3	831.8	91.5	133.3	157.8	84.5
1973	480.7	550.2	87.4	780.4	857.0	91.1	136.4	163.2	83.6
1974	674.5	644.5	104.7	833.7	807.6	103.2	147.3	155.0	95.0
1975	872.9	859.3	101.6	872.9	859.3	101.6	155.0	166.9	92.9
1976	1,156.3	1,151.8	100.4	925.8	999.0	92.7	167.1	197.8	84.5
1977	1,432.8	1,405.1	102.0	980.0	1,106.3	88.6	177.5	232.4	76.4
1978	1,884.2	1,916.3	98.3	991.2	1,318.9	75.2	184.2	281.8	65.4
1979	2,227.5	2,629.6	84.7	1,030.3	1,529.7	67.4	198.1	329.7	60.1
1980	2,693.1	2,809.0	95.9	999.3	1,359.5	73.5	195.6	299.4	65.3

\* 農家所得은 農家購入價格指數로,都市勤勞者所得은 消費者物價指數로 [디플레이트 ] 함.

資料:農水產部,「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80. 經濟企劃院,「都市家計年報」, 1980.

- 라. 轉換期農業에 대한 政策課題
  - 商業營農을 指向하는 生產基盤造成
  - o 農産物需給 및 價格安定裝置卟련
  - o 流涌構造 改善
  - o 商業營農體制가 確立될 때까지 農業保護의 持續

#### 2. 農業保護의 推移와 展望

#### 가. 農業保護의 概念

- ο 保護의 意味
  - 保護란 "國內產業 生產量을 늘리기 위해서, 輸入되는 該當 產業의 製品에 關稅를 賦課하는 것"또는 國內產業의 附加價值를 增加시키는 것을 뜻함.

#### o 農業保護率

- 農業保護率은 農業을 保護하기 위해서 關稅 또는 非關稅 自由貿易制限措置를 賦課했을 경우에 自由貿易時와 比較하여 農業의 附加價值가 얼마나 增加했는가를 比率로 표시한 것임.
- 廣義의 農業保護는 國境保護뿐만 아니라 農業에 대한 支援을 포함하는 概念임.
- o 農業保護의 目的
  - 國民經濟의 均衡發展
  - 農・工 또는 都・農間 所得隔差의 縮小
  - 따라서 農業保護의 成果는 生產者의 直接的인 所得增加의 形態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함.

#### 나. 農業保護率의 計算方法

#### o 名目保護率

- 概 念:(<u>國內價格</u>-1)×100
- 非關稅 輸入規制가 전혀 없는 경우,關稅賦課 후에 國內價格은
  國際價格에 關稅를 더한 것이 되므로 法定關稅率은 名目保護
  率의 좋은 指標가 됨.
- 非關稅 輸入規制가 없고,關稅滅免이나 彈力關稅가 適用되는 경 우 實績關稅率은 名目保護率의 좋은 指標가 됨.
- 各種 非關稅 輸入規制가 널리 使用되는 대부분의 農產物에 있어서 法定關稅率 및 實績關稅率은 名目保護率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며,同一品目에 대한 國內外 價格의 直接比較에 의하여 名目保護率을 算出하게 됨.
- 名目保護率은 關稅의 消費効果 위주의 개념으로서 國內生產에 대한 保護効果를 정확히 나타내 주지는 못함.

#### o 實効保護率

- 最終生產物과 中間投入財의 交易을 동시에 고려한 實効保護率의 概念은 "關稅 및 非關稅의 輸入制限 措置하의 한 品目 또는 產業의 附加價值가 自由貿易 상태하의 附加價值보다 늘어난 比率"로 定義됨.

#### - 實効保護率

- = **關稅賦課 후의 附加價値-自由貿易下의 附加價値** 自由貿易下의 附加價値
- 實効保護率은 各 中間投入物에 대한 保護効果를 同時에 고려 한다는 强點을 가짐.

- 實際 計算에 必要한 資料는 最終生産物 및 各 中間投入 財의 名目保護率, ユ리고 投入係數임.
- 다른 條件이 일정할 때 最終生產物의 實効保護率은 그것에 대한 名目保護率이 높아짐에 따라 높아지는 關係가 있음.
- 自由貿易下의 附加價值는 사실상 觀念上으로만 存在하는 概念 이므로 실제로는 關稅率을 디플레이터로 사용하여 구함.
- 實際 計算時는 產業聯關表를 利用함.
- 非交易投入財의 附加價值,즉 實効保護率에 대한 假定에는 Ba·lassa 方式과 Corden 方式이 있으며,陽의 實効保護率에서는 Corden 方式의 保護率이 작게 나타남.
- ㅇ 消費者 負擔에 의한 農業保護率(Marcron方式)
  - 概念
    - 農業保護의 社會的 費用=(國內生產者價格-國際價格)×國內生產量
    - 農業保護率(=價格支持率)
      - = <u>農業保護의 社會的費用</u> × 100 國內生產量×國內生產者價格
  - 이러한 方式의 農業保護率을 달리 表現하면 國內價格 - 國際價格 × 100 임.
    - ※ 農業保護率을 解釋할 때는 다음과 같은 면을 주의해야 할 것임.
      - (1) 農業에 完全한 自由貿易을 실시하면 輸入需要가 急增, 輸入價格의 昻騰이 豫想됨.
      - (2) 國內農業生產의 縮小는 農業分野의 勞動・資本・土地 等生

(3) 農業生產의 縮小는 治山治水費用의 增加를 가져올 것임.

#### 다. 農業保護率 推移

ㅇ 計算品目:5大導入糧穀(쌀, 보리, 밀, 옥수수, 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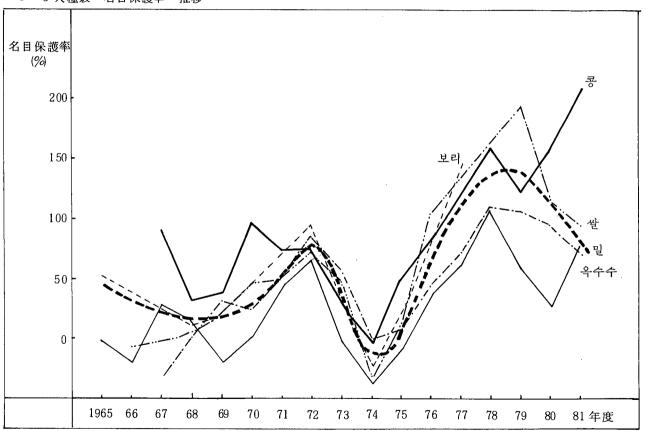
- 計算對象期間: 1965 ~ 1981年(17個年)

- 5大 糧穀 導入實績

	合	計	,	살	보	리	Ę	릴	옥스	ት ት	j.	런. O
年 度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	千州	千\$	千州	千\$
1966	525	45,380	32	5,356	_	_	340	36,521	3	3,503	_	_
1971	2,883	268,373	907	154,554		-	1,492	83,567	383	22 <b>,</b> 749	61	7,508
1976	2,846	480,269	157	44,147	-	-	1,711	287,211	859	116,922	119	31,989
1981	7,224	2 <b>,</b> 175,511	2 <b>,545</b>	1,138,501	-	_	2,095	420,248	2,355	424 <b>,</b> 148	529	183,614

資料:經濟企劃院,「主要經濟指標」,1982.

- 1966~ 81年間 導入量은 13.8倍, 導入額은 47.9倍가 늘어남.
- 쌀,옥수수,콩의 導入 急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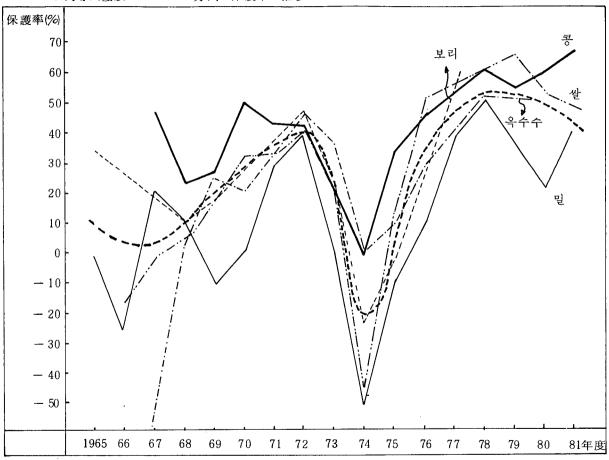


#### - 5 大導入糧穀 名目保護率 推移

單位:%

					單位:%
年 度	쌀	보 리	밀	옥수수	콩
1965	-	52.5	-1.0	_	_
1966	<b>~6.</b> 9	_	-20.6	_	_
1967	-0.2	_	25.8	-37.8	90.9
1968	5.0	11.5	12.9	1.6	30.6
1969	20.6	20.6	-19.6	32.7	35.4
1970	47.5		0.9	25.1	99.2
1971	51.0	-	41.3	50.6	73.8
1972	70.3	95.9	65.4	87.9	73.3
1973	23.8	31.2	-1.0	54.2	29.6
1974	-32.4	-19.3	-34.3	-0.8	-2.2
1975	14.5	-3.0	-8.8	11.1	51.5
1976	106.4	-	11.2	40.7	83.3
1977	-	137.2	64.3	69.5	120.9
1978	-	-	108:1	110.1	160.0
1979	195.7	-	57.1	109.4	122.9
1980	117.3	~	28.2	97.6	157.6
1981	96.8	_	78.2	75.2	215.0

註: -표는 導入實績이 없는 年度를 表示



- 5大糧穀 Marcron方式 保護率 推移

單位:%

					単位:%
年 度	쌀	보 리	밀	옥수수	콩
1965	_	34.4	-1.0	~	
1966	-7.4		-25.9	_	-
1967	-0.2	-	20.5	-60.8	47.6
1968	4.7	10.3	11.4	1.6	23.4
1969	17.1	17.1	-10.6	24.7	26.1
1970	32.2	-	0.9	20.1	49.8
1971	33.8	-	29.2	33.6	42.5
1972	41.3	49.0	40.0	46.8	42.3
1973	19.2	23.8	-0.1	35.8	22.9
1974	-48.0	-24.0	-52.1	-0.2	-2.2
1975	12.7	-3.1	-10.1	10.0	34.0
1976	51.5	-	10.1	29.0	45.4
1977	-	57.8	39.1	41.0	54.7
1978	-	-	52.0	52.4	61.2
1979	66.2	-	36.4	52.2	55.1
1980	54.0	-	22.0	49.3	61.2
1981	49.2	_	43.9	42.9	68.3

註: - 표는 導入實績이 없는 年度를 표시

- 1965 ~ 1981 年의 期間을 4區間으로 나누면
- (1) 1965 ~ 1972 : 世界穀物波動 以前期
- (2) 1972~1974:世界穀物價格 急上昇期
- (3) 1974~1978:國内穀物價格 上昇期
- (4) 1978~1981:世界穀物價格 不安定期
  - 1974 ~ 1978 年은 中東붐,輸出의 急成長에 따른 超過需要에 國內農業의 生産増加가 未洽하여 價格이 上昇된 期間임.
  - 農業保護率은 内外價格差 變動에 따라 1972年 및 1978年 의 2차례에 걸쳐 極大点에 달했음.
  - 1971~1978年은 5大導入糧穀의 保護率의 變化패턴이 거의 비슷하였으며, 그 以前과 以後의 期間은 品目別로 차이가 심함.

#### ㅇ 外國과의 比較

- Marcron 方式
- 쌀, 밀, 설탕,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등 8品目

單位:%

期間	日本	프랑스	西独	이탈리아	英國
1959-61	45.3	29.2	41.3	39.9	29.2
1964-66	51.7	31.7	37.6	40.7	14.9

資料:財務部 関税局

#### ○ 實効保護率 計算結果와의 比較

單位:% 1968 1975 1978 品 分 名目保護率 實効保護率 名目保護率 實効保護率 名目保護率 實効保護率 農 17.0 業 17.9 20.0 30.0 47.1 63.7 製造業 12.2 -1.137.0 46.0 6.65.2

註:1968年:金光錫, 剁스트괄,「韓國의 外換貿易政策」, 1976.

1975年:商工會議所、「産業保護構造의 分析과 関税調整方向」。1978。

1978年:南宗鉉,「韓國의 産業誘因政策과 産業別 保護構造分析」, 1981.

- 農業(農林水産業)의 實効保護率은 1968 年에서 1978 年까지 増加했음.
- 1968 年 및 1978 年에는 農業의 實効保護率이 製造業보다 높았으며, 1975 年에는 農業이 製造業에 비해서 낮았음.
- 이러한 結果는 名目保護率 및 Marcron 方式과 비교해 볼때 높은 名目保護率은 높은 實効保護率과 聯関이 있다는 理論 的 추측과 一致함.

#### 라. 農業保護率의 政策的 含蓄性

○ 農産物의 國內外 價格差의 變動과 함께 農産物 各目保護率 및 Marcron 方式 保護率은 週期的으로 變動해 왔으며,實効保護率의 變動도 그것을 反映하고 있음.

- 農産物에 관한 年度別 實効保護率 計算結果는 生産費에 基礎한 農業의 効率性 與否 내지 保護水準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豊
  凶 및 需給不均衡에 起因된 價格變動패턴을 反映하는 側面이더 강함.
- 1968 ~ 1978 年 사이에 急速히 進行된 離農 및 農家負債의 累積 現象과 그 期間중에 農業의 實効保護率이 増加되었다는 計算結果 사이에는 乖離가 있음.
  - 農業附加價值 增加가 農業內部의 資本形成에 寄与한 것이 아 니라 生産資材 및 기타 非農業分野의 生産에 寄与했음.

#### Ⅲ. 農水産物 關稅政策의 現況과 問題點

#### 1. 農水産物 關税政策의 基本體系

#### 가. 関税率政策

#### 1) 國内法定税率

#### ○ 基本税率

- 関税法 第7條 第1項에 依拠한 関税率表의 基本関税率
- 全體品目의 平均関税率은 25.7%이며 農水産物의 平均関 税率은 29.3%임.

#### o 暫定税率

- 基本税率 施行初期의 衝撃을 緩和하고 新規開発産業이나 重要産業을 保護育成하기 위하여 基本税率을 暫定的으로 引上 또는 引下한 税率.
- 適用을 停止하거나 基本税率과의 差異를 좁히는 調整만 行政府에서 할수 있음.
- 總 151 個品目이 該当되며 이중 農水産物에 該当되는 品 目이 9 個임.
- 農水産物 9個品目 중 基本税率보다 높은 品目이 7個, 낮은 品目이 2個임.
- 全體 151個 品目에는 基本税率보다 높은 品目이 76個 낮은 品目이 75個임.

<農水産物 暫定税率 現況〉

CCCN No.	ы		関 税	率 (%)
CCCN No.	뎞	Ħ	基本	暫 定
030106	어류(냉동한 것)		25	10
03030303	오 징 어		25	10
050901	녹 용		40	60
050902	녹 각		40	60
0801	바나나등		50	60
0802	감 귤 등		50	60
080402	포도(건조한 것)		50	60
09010101	커 피		30	40
09010102	커피(볶은 것)		50	60

#### 。 弹力関税率

- 國內外의 急激한 經済的 与件의 變化에 対処하기 위 여 國會가 関税率調整権의 一部를 行政府에 委任한 것
- 種 類
  - 不当廉売防止関税
  - 報復関税
  - 緊急関税
  - 相計関税
  - 便益関税
  - 物價平衡関稅(差額関稅,滑尺関稅,季節関稅)
  - 割当関税

- 위의 弾力関税中 農水産物에 適用되고 있는 것은 割当 関税뿐임.
- 總 29個 割当関稅 適用品目中 農水産物은 6個品目임.

<農水産物 割当関税 現況〉

單位:%,%

品品	目	基本税率	割 当 税 率	税 率 및 數 量
타피오	. 카 칩	40	20	120,000
빌		10	2.5	1,000.000
옥 수	수	20	10	255,000
대	두	20	12	297,000
우	지	20	7	117.840
팜	Ĥ	20	7	52,385

#### 2. 農水産物의 現行 關税率 構造

#### 가. 基本税率의 構造

- 。 法定基本税率은 0,5,10,15,20,25,30,40,50,100%의 10段階의 従價税의 従量税로 構成됨.
- ㅇ 主要國의 関稅率 構造와 比較하여 單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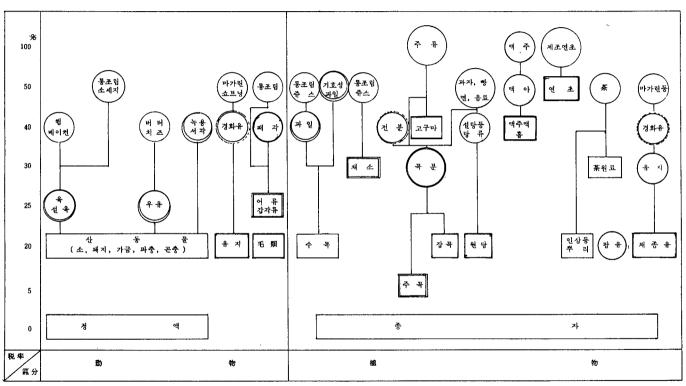
税 率 區 分	韓國	台湾	日本	美國	EC
基本	11	24	20		
基本+暫定+協定	16	43	76	44	68

- 農水産物(1~15類)의 基本税率은 0,5,20,25,30,40,50%의 7段階 従價稅로만 構成되어 있음。
- · 農水産物의 関税率 構造는 全體関税率 構造와 比較하여 單純한 편이며 日本이나 台湾의 農水産物의 関税率 構造보다도 單純한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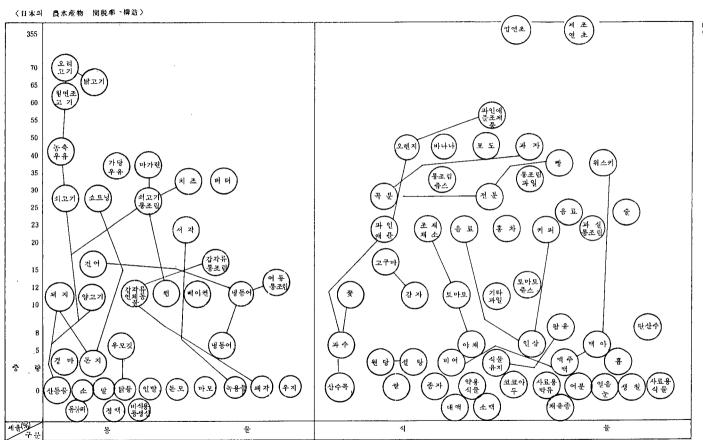
#### 나. 農水産物의 税率分布 및 實効税率

○ 農水産物 227個 稅目 중 101個(44.5%)가 20% 稅率에 集中되어 있으며, 25%以下의 稅率에 150個 稅目(66.1%) 이 있음.

#### <韓國의 農水産物 関税率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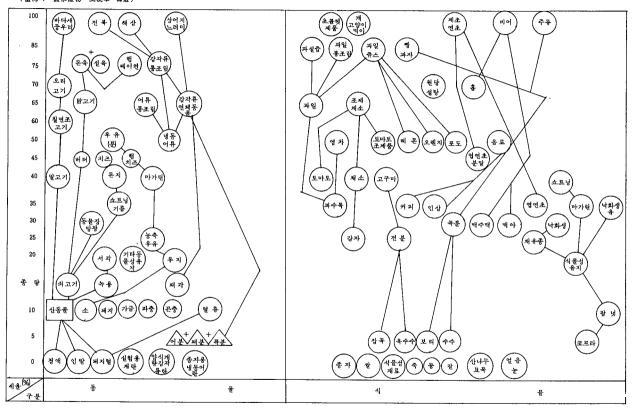


资料:財務部 關稅局



資料:財務部 關稅局

〈亞灣의 瓜水産物 関税率 構造〉



資料:財務部 關稅局

関税率	類							अ।						CCCN 8 單位			
(9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頻度數	%
0					1							7				8	3.5
5										9						9	4.0
10																-	-
15																-	-
20	15				18	9				7		29		10	13	101	11.5
25		11	14	5	2											32	14.1
小 計	15	11	14	5	21	9				16		36		10	13	150	66.1
30				2			8		1		5	1	2		6	25	11.0
40		1		5	4		1	11	8	1	4	2	1		4	42	18,5
50								3	5		1				1	10	4.4
100																-	-
小 計		1		7	4		9	14	14	1	10	3	3		11	77	33.9
合 計	15	12	14	12	25	9	9	14	14	17	10	39	3	10	24	227	100.0

 農水産物의 實効税率은 6.3%로 全體實効税率 5.0%보다 는 높으나 輸出用 原資材를 除外한 内需用 實効税率은 6.6%로 全體内需用實効税率 6.9%보다는 낮은 水準임.

<實 効 税 率 推 移>

單位:億弗,億원,%

	區 分		19'	1979		80	1981				
	區			<i></i>	r 	全 體	農産物	全 體	農産物	全 體	農産物
輸		入	額		(A)	203	14	223	16.1	261	26.2
輸	出	用	原	資	材	51	1.3	57	0.8	71	1.3
内	需	用	輸	入	(B)	152	12.7	166	15.3	190	24.9
関	税	徴	税	額	(C)	7,323	612	7,661	610	8,901	1,120
	需實	効税	率	C	/B)	10.0	10.0	7.6	6.6	6.9	6.6
實	効	税	率	(C	/A)	7 <b>.</b> 5	9.0	5.7	6.3	5.0	6 <b>.</b> 3

税率段階別 實効税率에 있어서는 20% 税率品目의 實効税率이 4.8%, 25%税率品目의 實効税率이 12.6%로 가장
 큰 差異를 나타냄.

#### <税率段階別 實効税率>

單位:千弗, 百萬원, %

		輸	入	徴	税	實効税率
関税率	主要品目	金 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具 郊 优 辛
50 %	嗜 好 品	12,528	0.5	3,360	3.0	39.2
40	과 일	62,673	2.4	17,105	15,3	39.9
30	菜   蔬	53,811	2.0	11,793	10.5	32.1
25	肉 類,魚 類	152,184	5 <b>.</b> 8	13,141	11.7	12.6
20	산動物,雜穀	846,697	32.3	27,564	24.6	4.8
5	主穀	1,490,587	56.9	39,103	34.9	3.8
0	精 液,種 子	2,815	0.1	0	0	0
計		2,621,295	100.0	112,066	100.0	6,3

o 農水産物의 関税가 全體関稅徵収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2.6 %로 높은 편이며 대체로 増加하여 왔음.

#### <農水産物 関税寄与度>

單位:億원,%

	徴 税 額	農 水 産	物 徴 税		
年 度	<b>以</b> 优 银	金 額	比 率		
1977	3,859	198	5.1		
1978	6,464	426	6.6		
1979	7,323	612	8.4		
1980	7,661	610	8.0		
1981	8,907	1,120	12.6		

#### 3. 農水産物의 輸入規制 現況

#### 가. 輸入規制의 根拠

○ 輸出入 期別公告(貿易去来法 第9條):

輸出入에 関한 品目의 承認,許可,禁止 및 그 品目의 數量이나 金額의 限度,規格 또는 地域에 対한 制限을 毎年 또는 分期別로 商工部長官이 綜合的으로 公告하는 것.

#### ○ 特 別 法:

糧穀管理法,飼料管理法,水産業法,鳥獸保護 및 狩獵에 関む 法律,紅蔘專売法,人蔘事業法,種苗管理法,主要農作物種子法, 薬事法,痳薬法,大麻管理法,蚕業法,당训專売法 等.

#### 나. 輸入規制 現況

- o 関税率表上 1~15類에 속한 CCCN 8單位品目 639個 중
  - 輸出入 期別公告에 의해서 規制되는 品目: 246 個
  - 特別法에 의해 規制되는 品目: 199個

〈農産物 輸入規制 現況〉

單位: CCCN 8 單位品目數

類別	品目數	期別公告	特別法	類別	品目數	期別公告	特別法
1	48	14	13	9	29	10	9
. 2	21	20	0	10	20	0	20
3	139	100	11	11	14	1	11
4	20	13	1	12	74	17	35
5	58	15	11	13	20	0	20
6	19	0	3	14	27	3	11
7	36	4	12	15	72	15	41
8	42	34	1	計	639	246	199

註:其他 1品目으로 計算

- ㅇ 全體輸入規制에 비하여 農水産物에 대한 規制幅이 금.
  - 全體輸入自由化率: 76%
  - 農水産物의 輸入自由化率: 62%(期別公告基準)
- 이 대체로 外國에서도 農水産物에 대하여는 輸入規制가 鉱工業 보다 큼.
- o GATT에도 農水産物에 대하여는 例外規定을 두고 Kennedy Round 나 MTN에서도 農水産物分野에서는 一括 妥結이 失敗됨.

<主要國의 残存輸入規制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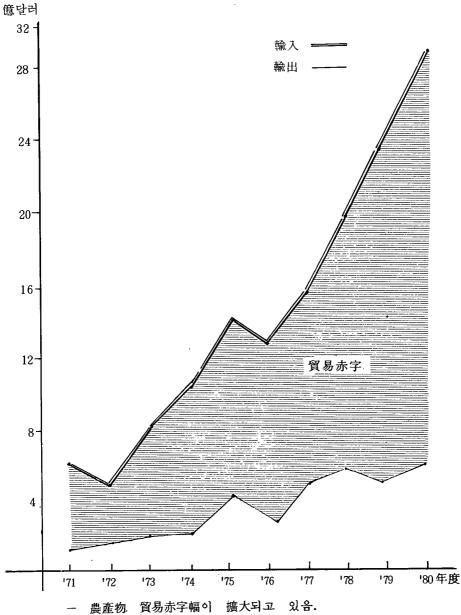
國	名	品目數	農水産品	鉱工業品	主 要 品 目		
西	独	4	3	1	감자, 調製野菜, 石炭		
<u> </u>	랑 스	46	19	27	과일一部, 野菜一部, 毛織物		
이틱	날리아	8	3	5	바나나, 포도, 과일쥬스, 천연콜크		
<b>ਮੀ</b> ਪੰ	룩스	5	2	3	감자, 토마토, 포도, 石炭		
英	國	3	1	2	바나나, 黄麻織物, 包装袋		
美	國	7	1	6	설탕, 英文書籍		
쾌	나 다	5	4	1	버터, 치즈, 粉乳, 카세인		
스	웨 덴	6	5	1	生鮮一部, 밀, 신발		
덴	마 크	5	5	0	羊고기, 감자, 토마토, 에틸알콜		
Ħ	本	27	22	5	  쇠고기,乳製品,오렌지,과일쥬스		

註: CCCN :4單位基準

資料:「日本貿易年鑑」。1982

## 4. 農水産物 輸出入現況

○ 農産物 貿易赤字



○ 1979 年부터 農水産物의 輸入増加率이 總輸入 增加率보다 높 아져 總輸入額 중 農水産物이 차지하는 比重도 커지고 있음.

<農水産物 輸入增加率 및 輸入比重>

單位:百萬弗,%

年 度	全	體	農	水産	物
十 皮	輸入額(A)	増 加 率	輸入額(B)	増 加 率	比重(B/A)
1977	10,810	23.2	741	17.1	6.9
1978	14,971	38.5	952	28.6	6.4
1979	20,338	35.8	1,397	46.8	6.9
1980	22,291	9.6	1,611	15.3	7.2
1981	26,131	17.2	2,621	62.7	10.0

消費性向의 變動에 따라 輸入이 急増하는 品目(쇠고기,청 한 어,건포도,낙화생等)과 國內作況에 따라 起伏이 심한 品目(쌀,마늘,고추等)과 飼料 및 工業用原料로 꾸준히 増加하는 品目(옥수수,대두,우지等)으로 大別됨.

### 5. 農水産物 關税政策의 問題點

- 가. 農水産物 輸入斗 関税政策의 連繫性 缺如
  - 農産物 輸入이 管理貿易化된 背景
    - 國民食糧의 需給不均衡 最少化→需給計劃必要→輸入數量制限
    - 輸入農産物의 流通 い 極少化 消費者保護
    - 輸入農産物의 販売價格과 國內產 代替農産物의 價格均衡維持 。 · · ·

- 輸入農産物의 販売價格差額을 基金化시켜 農産物價格의 季 節變動: 緩和.
- 関税政策이 農産物 輸入에 一括的으로 適用되기 困難한 背景
  - 國內外 價格差가 매우 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混 在됨.
  - 農作物의 豊凶과 季節性에 따른 價格變動에 대처할 수 있는 関稅政策의 柔軟性 缺如(彈力關稅의 運用實績 없음).

## 나. 農水産物 輸入의 基本方針 確立 缺如

- 。 農業開発과 物價安定政策의 相衝
- ㅇ 農産物 生產이 自然條件에 크게 依存함으로써 需給豫測이 困難
- 農水産物의 需給 및 價格安定装置 缺如
- 價格安定을 위한 農水産物의 弾力的 輸入에 대한 生産者의 消費者의 認識不足
- ㅇ 合理的인 関税政策 確立의 困難

# **叶. 農水産物** 関税賦課基準 未確立

- 関税 및 輸入規制品目 選定基準 缺如
- 品目別 関税率 策定基準 缺如
- ㅇ 関税政策 効果가 意図대로 나타나지 않음.

- 라. 農水産物 関税率 構造의 過度한 單純化
  - 財政収入과 関税行政의 便宜性을 위한 関税率構造의 單純化로 農水産物 特性에 맞는 関税行政의 施行이 困難す.
  - o 税率方式(linear cutting)에 의한 関税率의 引下調整으로 関税의 産業保護機能이 弱化되어 非関税輸入制限의 必要性이 변大됨.

### 마. 関稅에 의한 農産物 價格支持政策의 補完 未治

- 関税率水準이 内外價格差量 補填하지 못하고 農産物價格은作況 또는 季節에 따라 騰落이 심한데 비하여 関税率은 ユ運用이 硬直的이어서 各種 基金制度 등이 併行 實施되고 있음.
- o 差額関稅, 슬라이딩関稅, 季節関稅制 등의 制度的 装置가 있는데도 運用된 바 없음.
- 関稅에 의한 價格支持補完作用이 未洽하여 農水産物의 輸入
  이 生産意慾의 下落과 直結됨으로써 生産者와 마찰을 일으
  치.
- 生産基盤 萎縮斗 需給 및 價格의 不安定 誘発

# Ⅳ. 農水産物 關稅政策의 調整方向

1. 農水産物 輸入政策의 基本方針과 目的

## 基本方針

- o 國民食糧의 安定的 供給을 위하여 國內生産 可能む 品目의 増産誘導
- 國內需要가 크게 伸張되면서 自然條件으로 보아 生産供給이 慢性的으로 不足되는 品目의 適正한 輸入持續
- 農業所得의 主源을 이루는 品目의 生產에 惡影響(代替効果가 큰 것)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輸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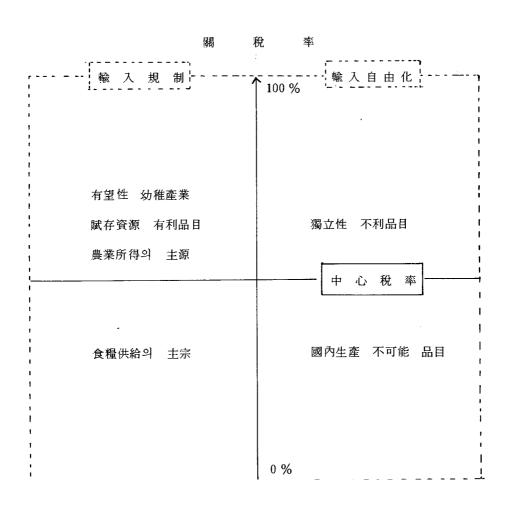
·目的·

- 農家所得 保障
- 物價安定

(生產者斗 消費者 同時保護)

## 2. 農水産物 關税政策과 非關税政策의 體系確立

#### 가. 輸入制度의 關稅制度의 關係



## 나。輸入規制適用 對象品目 選定基準

- 食糧供給의 主宗을 이루는 品目으로서 需給이 非彈力的이어서 價 格變動振幅이 極甚한 農水產物(例:쌀,보리,밀,콩,감자,고구마)
- 農業所得의 主源을 이루는 品目의 生產에 惡影響(代替効果가 큰 것)을 주는 品目(例: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果實).
- 有望性있는 幼稚産業으로서 開發支援이 要望되는 品目 (例:牛乳 및 乳製品,施設園藝,花卉)
- 賦存資源이 풍부하여 國內生產이 有利한 品目(例:水產物,염소,토끼,버섯,蠶繭).

#### 다. 關稅制度

- 1)基本關稅率의 決定指針
  - 原料用 農產物의 基本關稅率은 可能한 한 低位水準으로 調整되어 야 함.
  - 國內生產이 有利한 品目과 競合이 심한 品目의 基本關稅率은 可能한 한 높게 維持되어야 함.
  - 輸入規制 對象品目 중 食糧供給의 主宗 내지 農業所得의 主源을 이루는 品目은 基本關稅率을 低位로 調整함과 同時에 販賣差 額을 基金化하여 該當分野의 開發에 活用도록 함。

- 輸入規制 對象品目 중 輸入割當이 民間에게 직접 주어지는 경우 基本關稅率은 可能한 한 높게 유지되어야 함.
- 2) 價格支持를 위한 彈力關稅制의 漸進的 活用
  - 季節關稅制度:季節的으로 生產되는 品目의 出荷期에 基本關稅
    率의 40% 범위 안에서 關稅率을 引上하여 輸入을 抑制하고,非出荷期에는 引下하여 輸入을 促進함 (例: 강母).
  - 滑尺關稅制度:國際價格이 急騰하여 關稅製品의 國內價格이 不安定해질 우려가 있을 때 關稅率을 떨어뜨려서
    輸入價格을 下向調整함(例: 옥수수, 옥수수, 부脂, 타괴오카),
  - 緊急關稅制度:國內產業保護를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하거나 緊急히 어떤 物品의 輸入을 抑制하려할 때 特定輸入品의 關稅率을 높여서 賦課하는 關稅.

討議

金榮鎭(司會: 農經研 研究委員): 資料說明에 대한 의문이 없으면 토의에 들어가겠다. 토의는 1인당 5분에서 7분으로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약 10분 동안에 걸쳐 結論을 내리도록 하겠다. 討議는 일정한 순서없이 편의상 사회자가 지명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먼저 이 분야를 전공하고 높은 識見을 가지고 있는 서울大 貿易学科 金 世源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金世源(서울大 貿易學科 敎授): 農業經済学을 專攻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단지 평소에 생각했던 몇 가지를 내나름대로 論理에 입각해서 원칙적인 문제만 이야기하겠다.

지금 說明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農業部門을 工業部門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農業部門을 工業部門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韓國에서는 항상 工業部門과 農業部門을 비교하여 농업부문이 마치 부담이 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할 수 없고, 국민전체적인 公經済的인 차원에서 별도의 정책기조로, 일종의 價值觀도 포함하여 농업부문을 다뤄야 할 것이다.

農産物에 대한 輸入政策을 세워 이를 수행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특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부분의 農産物에 있어서 國際市場은 일종의 불균형상태를 이루고 있다. 국제시장은 특히 供給過剰状態를 빚고 있으며,美國을 비롯한수 개의 주요 공급국에 의하여 寡占下에 있으므로 供給 및 國際價格이 항상 政策的으로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2천년까지의 長期展望보고서를 보면 先進諸國에서는 供給過剰이 예상되는 반면에 社會主義 諸國이나 특히 후진국의 경우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급부족을 면치 못한 것 같다.

둘째,主要諸國은 거의 예외없이 農産物市場의 경제적 특성은 물론 그밖의 社會・政治的 要因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保護政策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國際市場은 크게 歪曲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関稅政策案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타 非関稅障壁 ~ 輸出補助,生産費補助政策의 요인 때문에 「케녜디 라운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議題 중의 하나가 農産物貿易의 自由化였지만 EC와 美國간에하등의 타협을 보지 못해서 한때는 「케녜디 라운드」가 깨질 지경까지 갔었다. 美國의 주장은 소위 自給率을 결정하여 자급을 이외는 輸入에 의존해야 한다는 일종의 마켓 쉐어(Market Share)개념을 주장한데 비해서 EC에서는 保護政策의 양성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시키자고 주장했었다.

이 報告書에서 지적이 되지만 農産物貿易은 GATT 테두리 밖에 있다. 國際貿易 규정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종의 治外法權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세째, 國際事情에 있어서의 특징으로서는 EC나 日本과 같은 공업국도 効率性이나 比較慢位概念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사회발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주요 기초 농산물에 있어서는 자급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의 國際經済 추세를 보더라도 이러한 自給體制의 지향은 강화될 것 같다. 이러한 國際市場에 있어서의 특징을 고려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 農産物部門 輸入政策樹立에 있어서는 어떠한 원칙과 방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상세한 언급은 피하겠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만 강

조하고 싶다.

첫째,農産物貿易에 있어서 輸入政策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EC에 加入하기 전 영국식의 赤字補償制度(deficiency payment system), 다시 말해서 수입을 자유화하고 결국 국제시장과 국내가격과 의 차액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조해주는 식의 일종의 自由貿易主義的인 政策이며 다른 하나는 EC의 경우와 같은 保護主義 政策으로 주요 곡물에 있어서의 레비 시스템 (Levy System)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레비로 받아들이는, 그럼으로써 주요 농산물의 自給을 지향하는 政策이다. 한국의 경우 과연 이러한 両大 政策 가운데 어떠한 정책을 택할 것인가. 한국의 경우, 農業部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장기적인 次元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에서의 經済安定. 國際収支 개선 및 지속적인경 제사회발전, 나아가서 自立經済의 달성을 고려할 때, 주요 基礎農産物에 있어서는 EC형 自給體制 지향적인 政策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싶다. 따라서 최근에 하락일로에 있는 自給率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는 대내외적인 保護政策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農 産物輸入政策은 저반적인 産業政策의 테두리내에서 조정되어야 함은 론이지만 工業部門의 경우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다

國內自給度의 제고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10 년내지 15 년에 결친 장기적인 政策이 수립되어야 하고 대내외적인 保護政策은 이 기간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완화됨으로써 國際競争力이 배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保護냐, 非保護냐를 놓고 명목상으로는 보호가 강조되어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보호되어 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보다 장기적인 농산물 수입정책이 채택되어 그 기간 동안은 보호하여 주고 이 기간 동안에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보호정책을 완화시켜 나가는 幼稚産業保護論에 입각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보호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외적인 측면에서 수입정책과 관련하여 국내 농산물가격은 生産費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하겠고, 輸入政策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국내외 價格差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산물의 경제적 특

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関稅수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절한 非関稅 政策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소득보호, 소비자의부담경감 및 물가안정을 고려하여 국내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담당할 수 있는 準公共機関의 역할이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입정책과 병행하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支援政策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원정책은 농산물의 生産性 향상및농업의 現代化에 그 취지가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司會: 다음에는 農業經済学을 전공하신 中央大学校의 金成勲 교수께 부탁드린다.

金成勳(中央大 農大 教授): 이제 말씀하신 金世源教授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輸入関稅制度를 이야기 할 경우에, 이를 일반 食糧需給政策이나 農業政策과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의 장단기 食糧需給政策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또는 농업 · 농촌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전체적인목표와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 즉 식량수급정책 내지는 농업정책의 범위내에서 輸入関稅制度가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다.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수입제도는 각 기관에 품목별로 분산되어 있고, 도입방법도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제도나 정책에 있어 일관된 方向 내지는 政策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현재의 수입제도는 能率性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두번째로 식량의 국내 증산 시책과 수입관세정책은 서로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連繫性을 갖고 한 정책의 틀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현단계에 있어 곡류의 경우 약 50% 이상을 도입하고 있으며 농산물 전체로 볼 때도 거의 '40%에 가깝게 도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국내증산시책과 연계되지 않는 수입제도나 정책 혹은 관세정책은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우선 長期食糧 基本政策을 확고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가령 국내생산기반을 어떻게 하든지 유지 확충한다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런 맥락 속에서 수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関稅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代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의 수급과 국내 증산 및 수입을 행정적으로 하나로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예를 들면 食糧廳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각 導入農産物別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基金 운영의 硬直性만 보더라도,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분명한 代案이 없는 채 기금은 쌓여만가고 있으며, 이것이 과연 수입의 合理化와 增産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의문스럽다. 그래서 식량의 증산과 수입을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食糧廳 같은 것이 있다면 관세정책에 있어 몇 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생각한다.

우선 관세만 놓고 이야기 한다면 EC,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모두 다양한 関稅率 구조를 갖고 있다. 다양한 관세율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농업의 特殊性을 감안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묘한 政治・經済的인 函數와도 관계가 되는 것이다. 관세율 구조가 다양하면 할수록 貿易保護의 화살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현재 세계 각국이 남의 나라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自國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현실이므로 식량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國民生存權과 결부되는 것으로 전제할 때 다양한 관세율 구조에 의한 농업의 特殊性을 살린 간접적인 農業保護가 필요하지만 세계의 전반적인 추세가 非関稅 장벽의 방법에 의해 수입을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결국 조금 전에 金世源 교수님이 말씀하신 EC의 賦課金制度라든가 基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 또 도입농산물의 국내판매를 어떻게 현명하게 운영하느냐는 문제 등여러가지 방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먼저 우리의 식량에 대한 長短期 需給 政策 또는 農業政策의 方向定立 문제가 국민적 合意하에서 이루어져야 함 것이며 食糧을 자급하는 능력을 100% 가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국민의 生存権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적정한 수준의 自給能力을 확대해 나 가야 한다는 전제가 수립될 때, 輸入制度나 関税率構造 조정 또는 非関稅 장벽 등의 조정을 국내생산기반과 연계시켜 행정적으로 통괄할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司會: 다음은 오랜동안 言論界에서 활약하시고 현재 中央日報 論説委員으로 계신 玄英鎮선생님께 부탁드린다.

玄英鎭(中央日報 論說委員): 農業政策과 関稅면에만 국한해서 의견을 말하겠다.

관세에는 財政関稅와 保護関稅의 두 측면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정책이 과연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어왔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농수산업의 여러가지 限界性에 비추어 볼 때 관세정책은 다소 선택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主穀自給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절대적인 命題이므로 주곡에 대해서는 좀더 노골적인 保護関稅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고,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低率関稅를적용하거나 非関稅장벽으로 수입을 조정하여 국내 物價安定에 기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하자면 주곡자급을 달성하려면 이런 노골적인 보호관세를 적용하면서 국내 농수산물 價格支持政策을 병행해야 실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에 획일적인 均一関稅論이 일부에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것은 관세의 基本概念조차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이다. 국내 여러가지 産業政策에 관세가 작용하는 역할이 크다고한다면 劃一主義는 버리고,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탄력적인 관세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司會: 다음은 業界를 대표해서 韓國飼料協會 副會長으로 계신 全應暗 선생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全應瑨 (韓國飼料協會 副會長): 業界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이 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다.

근년 우리나라의 축산진흥시책에 따라 축산물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配合飼料의 수요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도입농수산물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료 원료로 수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옥수수가 연간 200만톤, 수수가 50만톤, 그리고 소맥분을 생산하고 남은 밀기울(소맥수입량의 25%), 기름을 짜고 남은 大豆粕(대두수입량의 78%) 등이 사료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연간 줄잡아 4~5억달러에 해당하는 飼料原料가 도입되고 있다. 도입되는 옥수수, 수수, 대두, 대두박 이런 것을 국내에서 당장 자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축산물이 과거와는 달리 국민 전체의 식량이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도입농산물에 대해서는 最低率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関稅政策面에서 특별한 고려를 하여 축산물가격을 안정시키고, 아직까지 발전단계에 있는 畜産業이나 飼料産業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主題発表때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日本이나 台灣 등 우리와 비슷한 발전 과정을 갖고 있는 나라의 사료원료에 대한 関稅政策을 보면,日本은 아직까지도 옥수수,수수 등 大宗을 이루는 사료원료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면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台灣은 대부분이 5%내지 그 이하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옥수수 등 기타 사료원료에 대한 基本関稅率은 20%나 된다. 그런데 그간 정부가 関稅減免制度를 적용하여 1981 년말까지는 옥수수의 경우 면세를 받다가 금년 상반기에는 2%,하반기에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大豆粕의 경우 1981 년도말까지는 4% 금년 상반기에는 7%,하반기에는 10%,이렇게 6개월마다관세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基本関稅 20%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그러는지,그렇지 않으면 配合飼料 産業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현재 이 단계에서는 配合飼料原料에 있어서는 과세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主題発表에서 언급했지만 원료용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低率의 관세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

지금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関稅滅免制度는 한편으로는 飼料業界에서 특례를 받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制度는 6개월마다 한번씩 稅率을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옥수수가 加工用일 경우는 10%, 飼料用일 경우는 5%의 관세를 물고있다. 그래서 사후관리하는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飼料業界의 희망은 만약 앞으로 이런 문제가 조정될 기회가 있다면基本稅率 자체를 아예 내려주고, 가능하면 滅免制度 같은 것을 활용하는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제한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사료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사료에 대한 세율이 안정되기를 바라며 最低率의 基本稅率로 조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쇠고기 문제이다. 쇠고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는 物價上昇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여겨져, 그 값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경우에는 긴급도입을 하는 등 導入에 대한 優先権이 매우 높다. 그러나 쇠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닭고기, 돼지고기와 같이 훨씬 경제적이고 営養價 높은 代替商品을 국내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導入에 의존하는 施策은 再考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쇠고기가 극단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하루 아침에 생산할수 없기 때문에 도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겠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畜産業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養豚이나 養鶏는 국내의 수요만 있다면 얼마든지 증산할 수 있는 生産體系가 현재 되어 있다. 價格構造라든지 관세·비관세政策을 통해서 쇠고기공급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면 畜産振興이 자연히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가해서 関税政策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飼料安定 基金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다. 현재 飼料協會에서 운영하고 있는 飼料安定基金은 아시다시피 畜産法 44조 2항에 근거하여 도입하는 사료원료의 도입가격과 基準價格을 설정해서 만일 도입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그 差額을 기금에 적립하게 하고 반대로 도입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

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基金자체는 축산업법 45조에 근거하여 畜協中央會長이 관리자로 되어 있고 興基金의 일부로서 별도 計理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 고 있는 방식은 상향조정은 매우 弾力的이고 하향조정은 硬直的이다. 다 시 말해서 國際時勢가 상승할 때는 安定基金의 기준가격이 재빨리 올라가 고 국제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곧이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예로서 옥수수의 수입가격은 톤당 110 달러 선이며 기준가격은 지나 3월부터 상당기간 동안 145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경우 基 金으로 적립해야 하는 액수는 35 달러로서 도입가격의 30% 이상이 기 금에 적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基金은 국제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 우 이를 안정시키는데 이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계속 적립되 기만 해서 옥수수 하나만으로 인해서 조성된 기금만도 무려 530억원이나 된다. 그러므로 국제가격의 변동에 따라 기준가격도 변동할 수 있게끔 수 입가격의 일정 비율을 예컨대 5%를 적립한다든가 혹은 톤당 몇 달러씩 적립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국제가격과 積立金이 서 로 즉각적인 反應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補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 지 않으면 基金을 한정없이 무작정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장차 옥수수 의 도입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國際時勢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적어 도 어느 정도의 基金을 갖고 있으면 時勢變動에 대처할 자신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水準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基金과 쇠고기 導入에서 언은 収入을 합하 畜産振興基金이 현재 무려 2,700억원에 이르 고 있다. 그렇다고 基金制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좀더 효 육적으로 유영하여 농수사물의 수입가격 안정, 국내 축산물가격 안정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기금의 積立에만 주력하는 운영방식이 지양되어 價格安定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司會: 다음은 延世大學校 經濟學科 朴振根教授님께 부탁을 드린다.

朴振根(延世大學校 敎授): 農業部門에 대해서는 門外漢이지만 되상적으로 느낀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다.

우선 어려운 계산을 통해서 나온 몇 가지의 関稅保護率이 몇 %이고 그차이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지 몇 %의 차이가 나는 경우 농업부문의 實効保護率이 제조업보다 높은 것인지 이런 방법이 政策에 반영될 때 오는 잠재적인 不安性은 상당히 경계해야 될 것이다. 그 차이가 몇 십 %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1~2% 정도라면 어떤방식의 보호율을 정책결정의 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農經研에서 애써서 계산하여 만든 保護率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으며 그보다는 농업부문이 가야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를 좀더 강조하고 그런 입장에서 関稅政策의 基本方向을 모색하 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날 농업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현실적으로 강 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품목별 保護率을 계산하는 것이 과연현 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 의심스럽다.

두번째로 조금 전에 玄英鎮 논설위원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 동감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関稅政策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농업부문, 비농업부문을 막론하고 사실상 정부의 財政収入을 확보하기보다는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보호정책인 성격을 강하게 띠어 왔다는 느낌이다. 60 년대와 70년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농업부문이 優先順位가 공업부문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외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으로 80년대에는 농업부문의 比重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안보적인 차원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 농업부문에 대해 資源配分에 있어 등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업부문에 어느 정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부문은 保護効果가 쉽게 나타나지 않으며 공급에 非弾力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製造業부문에 있어서도 幼稚産業保護論에 입자해 보더라도 많은 試行錯誤가 있었는데 농업부문은 그보다 더 큰 시행착

를 각오하지 않고는, 감히 농업부문을 보호할 정책을 세울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에서도 상당한 시행착오를 예상하고서 농업부문에 대한 관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래에 대한 不確實性을 감안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좀더 일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떤 정책에 있어서나 요즈음에 와서는 상당히 획일적으로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현상은 과거에 정책을 너무 세분화하였던 데에 대한 反作用인 것 같다. 이것은 반드시 농업부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利子率構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單純化에서 오는 행정상의 能率性은증대될지 모르지만 보다 한정된 범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업부문 뿐만 아니라 어떤 부문이든지 劃一化만이 能事는 아니라고 본다

또 한 가지는 主題発表에서 지적되었듯이 농촌인구가 老齢化되고 婦女 化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농 촌부문은 기계화를 하든, 어떤 방법을 쓰던 좌우간 생산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台灣과 비교해 볼 때 開発戦略뿐 아니라 여러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台灣보다 10수년 떨어져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때문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日本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실시한 土地改革이 어느정도 성공적이었다. 面積도 비슷하고 농사짓는 기후조건은 台灣이 우리보다 훨씬 유리하여 2毛作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은 식량의 自給自足에서 비롯된차이가 우리나라經済와 台灣經済를 잘라놓는 근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농업부문의 重要性을 강조하자면 농촌인구가 노령화,부녀화됐기 때문에 労動生産性이 떨어진다. 總生産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따라서 社會的인 인센티브

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농촌인구의 변화가 뚜렷한 조짐으로 나타나는 경우 농업생산의 절대적인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関稅를하나의 인센티브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関稅가 農業部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보호적인 측면에서 農業政策에 대한 関税政策의 중요성이 있다면 어느부문에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가. 賦存資源으로 보아서 토끼가 유망품목이니까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主題発表에 언급되어 있다. 물론 부존자원이 있고 유망하다면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얼마나 생산이이루어 지고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 생산을 하고 있어야 이를 보호하던지 말던지 하지 생산을 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몇 %의 관세를 부과하여 토끼를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農村經済의 특징으로 보아 그 保護効果가 나타나 수백만마리가 갑자기 생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한쪽에서 農業部門에 대한生産增大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농업부문에 대한 관세만이 농업부문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본다. 農村部門에 대한 투자가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可能性이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생산이 증대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投資計劃과 関稅政策이 병행해서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어떠한 투자계획도 保護政策이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입에 있어서는 보다 철저한 輸入管理도 관세정책에 의한 보호조치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현재 농산물의 무역에 있어서 생기는 상당한 貿易赤字는 수입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여 國際市場價格을 좀더 정확하게 예측할 경우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司會: 다음은 韓國開発院 研究委員으로 계신 楊秀吉委員께 부탁을 드린 다 楊秀吉(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두 가지 단계로 말씀드리겠다. 農經 때에서 마련한 자료에 대해 먼저 評價를 하고 이 평가가 주로 비판적인 것이므로 내가 생각하는 代案을 제시하겠다.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현재 KDI에서는 産業支援制度 改編方向을 연구 중이며, 그 研究作業의 중점 분야가 바로 関稅制度改編이다. 그리고 関稅制度改編을 연구하는 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関稅制度改編을 위한 기초자료인 名目保護率과 實効保護率이것에 대한 가장 최근 자료를 작업중에 있어서 한달내에 實効保護率値가 1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財務部로부터 이러한 자료협력을 얻는 동시에 우리가 제출하는 政策結論을 십분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 그런데 関稅政策研究라는 것이 순수한 학문적인 研究라기보다는 政策改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政策에 대해서는 대중의 이해와 집중에 支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난번 7월에 KDI에서 政策協議會를 개최한 바 있다. 그때의 결론은 한 마디로 몇 년에 걸쳐 8% 均一関稅率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천명한 바와 같이 이런 제안의 목적은 関稅政策에 대한 일반적인 토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놓은 한試案이었고,이 試案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했다.

첫째 産業政策手段으로서 関稅政策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산업구조에 큰무리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싶었고, 둘째 関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과 진실 사이에 흔히 있는 괴리에 대해서 非專門的인 분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싶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関稅政策에서 産業의 특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규범을 든다면 장기적으로 볼때 関稅率의 産業間 均一性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기에다 関稅가 부담한稅収制約을 감안한다면 약8%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당시 均一関稅率 理論의 중점은 産業을 보호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로부터 한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國內産業間의 特惠政策이라는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한 國民經済의 賦存된 資源이라는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한 産業에서 자원을 더 쓰면 다른 産業에서資源을 덜 쓴다는 이런 論理에 입각했던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保護體制가

균일할 때에는 國際競争力이 있는 産業은 스스로 國際競争力을 발휘합고 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関税라든가 保護政策體系가 不均一할 때에는 國際競爭力의 시현이 저해되다는 그런 인식을 제고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당시 이것을 제시하면서 저희들 자신도 関稅率 또는 輸入의 完全開放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研究 初期段階에 서 이러한 関稅政策에 대한 長期規範을 인식시킨다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関稅政策이 현실적으로 不均一해야 한다면 불균일한 関税體制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였다. 제가 보기에는 不均一한 支援體系가 주 어질 때에는 不均一性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의례 関稅制度라거나 保護政 策은 産業間에 불균일해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방향이 잘못되지 않 았나 하는 취지였던 것이었다. 그래서 均一関稅率에 관한 많은 批判論이 나왔지만,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도했던대로 토의가 활발하게 벌어졌다. 經済 3団體에서 입장을 정리해 주었고, 각 쇠문에서도 거기에 論評이 있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은 均一関稅率에 대한 代案 이 나올 때는 관념적으로 関稅政策은 불균일해야 하며 이것만으로는 부족 하다는 이런 취지였다. 이 産業에는 좀더 保護가 주어져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제 2 단계로서의 토론이 추진되길 바랐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農經 硏에서 처음으로 均一関稅率 자체에 대한 개념적인 반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農業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는 합리 적인 반박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상당히 발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를 감사하게 여긴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여기서 발표하시 자료를 읽어 보았다.

農業政策은 여러분이 누누히 강조하신 바와 같이 政治, 經済, 社會的으로 극히 여러가지 중요한 정책이고, 또한 農業政策이라는 것은 그런 만큼 풀어야 될 方程式이 너무 많다. 그래서 農業政策은 産業政策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政策課題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農業政策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 장차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느냐 하는 基本方向提示,이것이 지금 농업정책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段階라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合理的

인 農業政策은 合理的인 工業政策의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다. 農業政策이 잘못되어서는 工業政策도 잘 될 수 없다.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합리 적인 농업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工業政策이라는 것은 흔히 工業部門間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지만 農業政策이라는 것은 農業과 工業간의 資源配分均衡을 말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均衡次元에서 重化学工業政策이라든지 공업 내부적인 産業政策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접하면서 특히 農經研이라는 研究機関이 農業政策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韓國開発研究院보다 전문성이 좀더 축적된 기관으로일반적으로 이해를 해왔고, 그래서 그러한 方向定立을 해주셨으면 하는 관점에서 읽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같다. 물론이것이 中間報告라고 하므로 그런대로 이해를 하고 그런 만큼 허심탄회한 비평을 가해서 最終報告에 반영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느낌이다.

이 報告書에는 朴振根 교수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인 基本方向이나 종합적인 戦略의 제시가 결여되어 있을 뿐더러 그러한 政策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農業保護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論理를 전개하고있다. 主題発表資料 9페이지에 商業農化에 대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고, 農業投資拡大가 결여되어 있으며, 農産物需給 및 價格安定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분간 農業保護의 지속이 필요하는 상당히 네가티 브한 논리가 나왔다. 차라리 農經研의 입장에서는 商業農化 政策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農産物需給 및 價格安定装置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그러한종합적인 政策 테두리 속에서 보호정책이 담당하는 역할은 이거다 하고 제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해야할 숙제를 안하고 숙제를 안한 것을 근거로 하여 숙제를 풀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12 페이지에 보면 좀더 다른 뉘앙스로 農業保護의 목적을 國民經済의 균형발전 도모, 農工 및 都農間의 所得隔差의 축소라고 간단히 넘어가 버렸는데 쟁점은 과연 그것인가. 農業保護가 그런 취지를 갖고 출발해도 과연 그것을 달성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하

나의 전제조건으로 넘겨버렸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를 회피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40~42페이지를 보면 現関 稅政策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을 논의하려면 어떤 규범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이러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다 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컨데 41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온다. 즉 지금 현재 関稅政策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農水産物 関稅賦 課基準이 미확립된 것이다. 지금 政策協議會를 하는 목적이 農水産物 関 稅賦課基準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 든요. 또 農産物 특성에 비춰볼 때 関稅構造가 너무나 단순하다. 그래 서 복잡해야 한다. 農産物 関稅構造가 왜 단순한지, 단순하므로 인해 어 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문제점을 입증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 기서 前提條件은 農産物의 國内價格은 國内生産費로 결정되고 海外價格 은 海外市場에서 결정되며 関稅는 그 차액을 상쇄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는데 과연 関稅政策의 기본역할이 그런 것이냐는 근본적인 이론에대 해서 문제가 많고 전반적인 흐름을 개괄하자면 農産物의 높은 價格은 우 리의 숙명이라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여기에 흐르고 있다. 앞으로 당분 간은 農産物의 높은 가격이 숙명적일지 모르나 조금 참고 保護政策을 지 속 내지 강화하면 農産物價格이 아마 이러이러한 품목은 國際價格에 접근 할 것이라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技術発展이나 制度改善이 있어야 될 것 이라든지 하는 긍정적인 政策代案의 제시가 있었더라면 農産物保護價格의 숙명론이 좀더 설득력이 있었을텐데 여기서는 그러한 설득력이 좀 결여되 어 있다는 점과 農業保護에 대한 정당한 論爭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는 그러한 것을 회피해 버렸다는 점에서 흐름상의 잘못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물론 잠정적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政策代案 樹立이라는 면에서 輸 入規制品目에 거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규제에서 어떤 품목이제외 됐는지 하는 의문이 들고. 國內生産이 유리한 것은 高関稅, 國內生産이 불리한 것은 高関稅라는 政策의 유도에 論理性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主宗 農産物에 대해서는 低関稅를 한다고 했지만 그 대신 基金을 위한 賦課金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는 関稅는 그 合計概

念이다. 基金이나, 関稅이나는 政府部処간의 實効関稅의 配分問題이고 소 비자 관점에서는 低関稅를 실시하고 그 차액은 農水産部가 쓴다고 하는 것은 産業発展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안되는 것이며 거기에서 나오는 基 金賦課金을 보호받는 산업에 준다는 것은 二重保護이다. 높은 보호로 발 생한 稅収는 소비자한테 가야 하는데 보호받은 산업에 또 投資하자는 것 은 二重保護, 三重保護라는 保護一辺倒의 정책제안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지금 農産物関稅政策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와 같이 그리고 朴振根 교수님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農産物関稅政策은 農業政策이라는 패키지(Package) 의 일부로서 파악되어야 하며, 따라서 農業의 장기적인 비젼과 방향제시가 선행되고 그러한 방향을 실천하는 과 정에서 関稅政策이 담당하는 역할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農業政策이라는 것이 어떻게 접근되어야 할 것인지,農業政策이라는 것 이 여러분이 강조하신 것처럼 복잡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農業政策의 복잡 성에 대해서 흔히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農業은 經済的 効率性 論 理만으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고 끝나 버린다. 經済的 効率性 論理만으 로는 안되는 것이나 이런 論理로는 되는 것이다라고 論理가 긍정적으로 풀어져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經済学的으로 말하는 것을 부정만 해 버리고 진전이 안되는데 저로서는 經済学的 観点, 非經済的 観点을 고찰 하자면 農業政策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의 산업으 로서의 農業政策 즉 産業政策으로서의 農業政策이고, 두번째로는 食品供 給政策 또는 消費者를 위한 農業政策의 측면이며, 세번째로는 농민을 위 한 農村政策의 일부로서의 農業政策이다

農業政策을 수립할 때는 이런 세 가지 정책을 골고루 감안하여, 동시에 調和있게 반영될 수 있는 政策代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업정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經済的 効率性의 문제이다. 오늘날 開放經済의 시대에서는 比較優位가 바로 경제적 효율성의 척도인데 여기에 관해서 하나의 공통적인 의견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장차 農業에서 比較優位를 개발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比較優位면에서 많이 뒤진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느 시골 청년 갑돌이가 예컨

대 10만원 어치 옥수수를 덜 심고, 대신 구두를 만들어 수출해서 그 外 貨로 옥수수를 사온다면 20만원어치 사을 수 있을 것이라는 効率性의 논 리일 것이다. 그래서 이 효율성의 논리만을 볼 때는 農業이 혹시 그 자연 상태에서 축소되면 놔두어라. 그것은 農業이 축소되서 農業人力이 빠져나 와 工業活動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工業化가 진전된다는 이면이 있다. 이 러한 工業化 과정을 자연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金世源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EC등 先進國의 예인데 지금 先進國과 우리나라가 입장이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60년대 農業人口는 60~70% 정도였고, 지금 현재는 32 ∼3 %가 되는데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도 3분의 1의 인구를 農業部 門에 묶어두어야 하는가? 여기에 비해서 현재 先進國은 어떤가. 美國만 해도 현재 農業人口가 약  $2 \sim 3\%$ , 나머지 선진국은 10% 내외인 것으 로 알고 있다. 물론 農業部門 자체의 중요성도 있겠으나 장차 우리가 먹 고 살고 우리 국민의 生活水準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工業化가 좀더 진 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예컨대 農業人口가 先進化되 10% 수 준까지, 소위 先進化된 수준까지 갈 때까지는 방치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다. 그리고 効率性 문제에 서도 두 가지 특기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農業 쪽에도 모든 産業이 比較 優位가 없지는 않고 어딘가 유망한 幼稚業種이 있을 것이므로 이런 것을 발견해 내실 분들이 바로 農經研 분들인데, 이런 産業이 발전될 때는 比 較優位 造成을 위한 여러가지 투자를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특수한 보호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난 7월에 韓國開発研究院에서 발표한 均一関税 原案에도 幼稚産業保護를 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또 하나 는 産業構造 調整이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에 따라서 산업구조정책 조정에 따른 희생이 극소화될 수 있다는 관 점을 말하고 싶다.

다음으로 食品供給政策으로서의 農業政策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관점인데 내가 보기에는 工業化의 진전에 따라서 소비자의 이익을 좀더 존중해

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經済発展이란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고 일을 한다면 보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보람이 있으려면 所得이 늘고 따라서 食料品 소비가 느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食品供給 차원 에서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소비자 부담이 문제 이다. 許信行博士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名目保護率이 떨어졌다 안 떨어 졌다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名目保護率 즉, 국내가격이 국제가 격의 3∼4배 정도에 일반적으로 도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렇게 소비자가 부담을 많이 안고 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二重 價格制를 구상할 수 있지만 그 경우 政府財政이 부담하므로 인플레가되서 가접적으로 소비자부담으로 돌아가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農 業保護는 소비자 복지를 낮추는 측면이 있는데 흔히 우리는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低所得層일수록 食品費 부담이 크므로 소비자부담을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것은 所得分配에 역행되는 효과가 있다는 관점을 말하고 싶다. 食品이란 것은 저소득층에 부담이 큰데, 저소득층은 대부분 도시지 역의 勤労者들이다. 이 식품비가 賃金의 중요한 決定要因이므로, 食品費 를 保護로 인해서 높이 유지한다는 것은 勤労者賃金을 높이게 된다. 그러 나 우리나라 製造業은 國際競争을 하는데, 國際價格에 있어서는 소비자 하테 転嫁를 못한다. 따라서 國際競争力 低下現象이 나오고 제조업발전이 저해되는, 다른 部門에 대한 부작용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許博 士께서는 價格不安定을 저와는 正反對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農産品의 供給이 자연조건에 의존하고 農産物需要는 가격에 非弾力的이니까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자 관점에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 법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만을 쓰려고 하지 않고 海外市場의 - 제품을 緩衝剤로 쓴다면 안정을 더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結論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보호에 대한 예외는 물론 食糧安保論이다. 그러나 食糧安保의 문제가 어느 품목에 걸치는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보 아야 할 것이다. 우유, 닭고기, 달걀, 밀, 옥수수 등 農畜産物이 모두 安 保関係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供給中断이 발생할 경우 문제될 품 목은 쌀 등 몇 개 안된다. 따라서 식량안보와 관련시킬 품목을 너무광범 위하게 해서는 안되고 좀더 選別的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쌀을 예로들어 볼 때 쌀의 供給安定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100% 自給自足을 해야될 것이냐 하는 데는 저도 지금 代案은 없지만 너무 單純化된 생각인 것같다. 備蓄制度에 대한 거론도 들어봤고 國際的인 備蓄革命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그런 것도 더 고려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한다.

다음에는 農村政策으로서의 農業政策에 대해 언급하겠다. 農業政策이 왜 農村政策인가. 그것은 우리나라 農民所得의 70% 가까이가 農業所得에 의 존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최근에는 財産所得이나 労賃所得이 완만히 늘어 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農民所得은 대부분 農業에 의존하고 있다. 그 래서 農業政策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農業政策에는 産 業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 즉 인간의 힘으로 퍼할 수 없는 문제 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가 우리 農民의 農業所得依存度가 높기 때문에 곧 장 社會問題化되고, 그래서 農業政策에 대한 합리적인 思考를 억제하는효 과가 크다고 본다. 供給의 季節的 不安定, 價格不安定으로 인해서 농민입 장에서는 農業所得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80년의 큰 凶作 때문 에 國基가 흔들리는 위기까지 갔었다. 또 農業発展이 아까 許博士 자료 에도 나왔지만 점점 처지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나 라 農業生産性 향상이 낮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農業投資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営農制度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南北問題에 흔히 부각되는 문제이지만, 農業을 포 함한 1차 상품은 交易條件이 악화되게 마련이다. 交易條件의 악화는 국 내적으로도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農業所得을 처지게 하는 추세가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農業政策을 관찰할 때, 産業政策 차원에서는 一部 有望誘致 品目을 제외하고는 보호를 止揚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食品供給次元에서도 食糧安保的 문제가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保護率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農村政策으로서는 농업을 보호하면 農業所得의 불안문제와 都農間의 交易條件悪化 문제가 예방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농촌정책으로서의 농업문제에 대한 代案

은 궁극적으로 農村所得이 農業에 덜 의존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다 시 말해서 일종의 脱農現象이 유도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을 전적으로 그만두자는 것이 아니고 農地制度改善, 農場規模 大型化 営農構造,営農方法,営農制度 자체를 현대화하여 생산성을 올리자는 것 이다. 그리고 脱農이란 다시 말해서 農外所得을 올리자는 취지이다. 이렇 게 할 때는 農業生産量이 줄어들 필요없이 심지어는 農業의 생산량 증가 가 加速됨과 동시에. 人口로 볼 때 농업에 덜 종사하고 農外所得에 더 종 사 하는 調和方法이 힘은 들겠지만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해보고 싶다. 脱農이라는 것은 반드시 離農은 아니다. 農村地域을 都市化함으로써 農村 内의 農外所得事業 投資를 유도하고 離農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도 없이 이 런 여러가지 문제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의미에서 이것을 試案으로 던져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현재 農外所得의 增大方案 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農經研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 으며 거기에는 下部構造에 대한 投資, 人力開発, 農業의 現代化 등등이들 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農村의 構造転換이라는 것이 保護體 制 안에서 과여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肯定的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保護가 存続하는 한 힘들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 을 것이다. 農外所得事業 投資를 유도함과 동시에 農村保護를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낮춤으로 인해서 農業의 都市化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保護政策을 주장해 놓고는 농민을 위해서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 실 保護政策은 둘째고 적극적인 政策処方을 내야 하며, 그것의 일부로서 関稅政策 및 輸入政策을 파악해 보자는 제안을 결론적으로 내고 싶다.

司會: 農政試案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언급해 주시고 또 지난 7월에 8% 均一関税 提案에 대한 의도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主題発表者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서 主題発表者의 발언 요청이 있었으나 이 토의가 일단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이야기하시도록 하고 다음에는 農業經済学을 전공하신 서울大学校 農科大学의 潘性納 교수님께서 말

씀을 해 주시기 바란다.

潘性執(서울大 農大教授): 農業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農業自體를 經済原理에 따라 完全競争體制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는 것 같다. 제가 알기로는 農經研에서 종합적인 農業開発과 관련해서 食糧問題, 價格問題, 市場流通問題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일부로서 関稅政策이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 결국 農産物에 대한 関稅問題가自由貿易에 대한 制限措置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着想」에 대해서 잠깐 만씀을 드릴까 한다. 결국 関稅가自由貿易에 대한 制限措置이기 때문에 物價, 특히 생산물의 相対價格, 자계층의 所得分配, 資源配分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經済政策樹立은 현상에 대한 신념, 즉 價値観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다. 정책목표는 効率性을 주로 한 成長戦略과 分配를 통한 衡平의 개념을 어 떻게 조화시키는가가 정책의 基本過程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이 시점에 서 經済原論을 생각해 본다. 經済原論에 經済学이란 무엇을 얼마나 생산 하며 누구를 위하여 생산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分配問題, 衡平의 문 제이다. 지금 이 문제가 度外視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經済를 성장 을 통한 効率性만 추구할 수 있는가. 효율성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 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楊博士께서 單一関 稅를 제시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지만 저 도 여기에는 同感이다. 그런데 農業이라는 것 자체는 短期的인 것이 아니 라 長期的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어떤 報告書에 의하면 앞으로 2000 년대에 가면 農産物의 實質價格이 약 95% 증가한다고 한다. 그런데 耕 地面積은 약 4% 증가하므로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전세계에 機가 올 것이라고 美國이나 FAO에서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耕地面積 이 늘지 않으면 生産性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구조적인 차 워에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KDI나 農經研에서 모두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農業生産性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앞으로 生産性을 높일 가능성은 많다. 실질적으로 穀物에 관한 한 우리 나라의 段歩当 生産性은 세계 평균의 약 2.5배 이다. 그렇다면 産性에 있어서 쌀은 世界頂上級이며 1979년에는 일본을 능가했지만 이후는 조금 낮은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土地生産性이 낮은 것 은 옥수수, 豆類 등이다. 食糧增産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도 중요하지만 현존하는 資源을 여하히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土地의 利用率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土地利用率은 과거 의 145~150 %에서 120 % 수준으로 下落했다. 이것은 食糧自給度를 떨 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總體的 生産을 높이기 위해서는 収支가 맞 아야 하는데 맞지 않는다. 関稅賦課가 보호정책의 수단중의 하나인데 單 一関稅를 부과하게 되면 農業保護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農産物 은 関稅를 조금 높게 매겨야 한다. 여기서 國際貿易의 比較優位를 논할 입장은 되지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農産品과 工產品을 같은 상품으로 생 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농산물은 生物을 다루는 것이며 필요할 때 생산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곤란하고, 소비측면에서도 다른 것 이다. 옷이나 자동차는 좀 덜 입거나 덜 타도 되는 것이지만 밥이란 먹 지 않으면 죽는다. 기본적인 食糧이라는 것과 生産基盤이 한번 파괴되면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工産品과 기본적으로 다르고, 市場構造가 근본 적으로 다르다. 농산품이란 個別生産者에 의한 完全競争條件下에 있는 것 이다. 실제로 主穀 등 많은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의 保護는 적다. 그러나 需要独占의 조건을 가진 것은 保護가 많다. 農業을 公經済部門으로 인정 하지 않고 私經済部門으로 취급하는데 문제가 있다. 다 아시다시피 美國 도 마찬가지이다. 美國의 초기발전에 있어서 가만히 놔두었으면 美國農業 이 저렇게 되었겠는가. 美國의 각 州立大学에 Land-grant College 를 두어 농업을 발전시켰다. 美國같이 발달된 農業에서도 패리티價格을 적용 하여 보호하고 있다. 農業保護는 関稅뿐만 아니라 支持政策에 의한 방법 도 있다. 經済理論上으로 自由貿易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각국이 自由貿易體制를 지탱하지 않고 보호의 장벽을 쌓 고 있다. 美國이 石油, 신발류를 보호하는 것은 比較優位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의 所得分配,雇傭政策에 의한 것이다. 앞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農村人口가 都市로 흘러 나오고 있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農 業人口가 楊博士 말대로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그렇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변화과정을 밟 지 않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면 사회적인 費用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즉 都市의 貧民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金世源 教授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기억에는 EC가 결성될 때 美國사 람들이 保護障壁을 쌓는 것이 아니냐 하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 이 하였다. 그 결과 60년대 중반의 農業保護를 보면 벨지움이 약 29% 프랑스가 약 29%, 서독 37%, 이탈리아 38%, 일본 39%의 農業保護 를 했다. 自由貿易을 함에도 불구하고 農業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농업을 國際市場에 開放한다면 농업자체의 生産基 盤 문제도 있고, 그의 資源配分 문제가 생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 리생사이 많이 줄어들고, 콩도 輸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서 옥수수는 자급을 못하더라도 낙화생, 콩, 보리 등은 적당히 價格만保 瞳해서 収支만 맞춤 수 있으면 상당히 生産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서 保護関税와 관련시켜 아까 金世源 博士께서 EC의 變動賦課金制度(Varying Levy System)를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支持價格을 설정하여 그 것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関稅를 조정하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 는 混合規定(Mixing Regulation)을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 다. 이것은 외국에서 콩을 얼마만큼 輸入할 때 우리나라 콩을 얼마만큼 사야되며, 그 價格差를 얼마만큼 두고 輸入業者에게 사도록 하는 것이다. 또 飼料름 수입할 때 國內보리를 가격차를 두고 얼마만큼 사야된다는 規 定을 두고, 팔 때는 같은 價格에 팔도록 하는 混合規定이다. 문제는 그 것이 物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農産物을 예를 들어 美國 처럼 싸게 먹으려고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자원의 賦存状態로 보아 土 地가 희소한 나라에서는 農産物을 그렇게 싸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싸게 먹기 위하여 完全競爭에 농업을 노출시키면 농업이 어떻게 되겠는가.

司會: 다음은 言論界의 元老이신 金成斗 선생께 말씀을 부탁드린다.

金成斗(朝鮮日報 論說委員): 개인적인 일로 늦어서 그동안 論議된 내용 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번지수가 틀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대충 이야기의 흐름을 본다면 農經研 입장으로는 均一関稅制度는 아되다는 주 장이고, 아까 KDI 楊博士께서는 均一関稅를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이야 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均一関稅라는 말이 나오니까 農經研 기타 農業関 係者들은 깜짝 놀라는 시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이 전에는 差等関稅制度를 가지고 농업을 보호한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회 의적이다. 関稅率이 여러가지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때까지 関稅率을 가지 고 農業部門을 보호하려고 한 일이 있는가. 그중에서도 중요한 農産物 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가 어떤 기능을 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 다고 財政収入을 위해서 関稅制度가 활용되어 본 적이 있느냐 하면 그것 도 아니다. 農業部門의 輸入增大라고 하는 문제는 政府의 價格安定政策의 일환으로 적당히 되어 온 것이지 이제까지 関稅政策으로 어떻게 해본 일 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通貨를 잔뜩 増発해 놓고 通貨安定을 위해서 1978 녀처럼 한꺼번에 굉장한 量의 쇠고기를 輸入한다든지 國際的인문제 가 있을 때 쌀을 수입해다 놓고 이것을 팔지 못해서 걱정한 식이었지.이 런 것을 保護関稅니 하는 문제와 견주어서 따지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어 려운 것이다. 分析을 잘 해놓고 있기는 하지만 関稅理論가지고 되지 않는 다. 農産物輸入政策이랄 것도 없지만 그런 것을 関稅政策이라는데 갖다 붙이려고 보니까, 이렇게 규정한다 저렇게 규정한다고 분석해 놓고 있는 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用語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関 税政策이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다. 사실 農業部門이라는 것은 工業化를 위해서 제기되는 인플레이션의 除去라든가 하는데 대처하 기 위해서 輸入되는 것이지 関稅率같은 것의 문제는 2차. 3차의 문제 가 아니겠는가. 문제를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현실적 으로 어떻게 진전되어 온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좀더 검토할 필요가있 다.

조금 전에 理論的인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혀실적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輸入開放 등이 너무 無軌道하게 進展되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솔 직히 승인하고, 이것을 制動하는데 関稅가 어떤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工業化 위주로 밀고 나온 고동안의 開発政策을 추진한 당사자들과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는 사람들은 언필칭 比較優位라는 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하느님은 農業部門에 관한 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資源配分을 그렇게 해 주지는 않았다. 가령 美國. 캐나다. 아르헤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 등에는 상당히 풍부한 農業資源을 유리하게 配分해 놓고 있는 반면에 아주 불리하게 배분받은 우리 같은 지역이 있다는 것을 들고 나온다면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農 業이라는 것은 모두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論理가 성립될 것이다. 뉴질 랜드, 호주에 비교하여 거기서 나오는 쇠고기 하고, 구라파나 다른 先進 國에 비교할 나라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캘리포니아에서 粗放的으로 생 산되어 나오는 쌀과 다른 나라의 그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 러면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農事는 다 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런가? 아주 불리한 데서도 농사를 짓고 있고, 우리가 아주 급속한 발 전을 하고 있는 나라로 그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는 日本에서도 쇠고기에 高関稅를 부과하여 國內畜産을 보호하고 있고. 아직도 상당한 開放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比較優位를 農業部門에 적용하여 불리한 쪽으로 자꾸만 밀어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論理인가에대 해서 회의를 품을 때가 많다. 이것이 無國籍的인 思考方式이 아닌가 하 는 인상을 받을 때도 있다. 工業化가 언필칭 우리에게 있어서 比較優位 部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억지로 比較優位를 만든 것 같다. 大成할 수 있다는 比較優位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자. 國內産業 을 희생해서 工業部門에 比較優位 만들자고 20년이나 만들어 봤는데 이 것이 여의치 않은 것이 아닌가. 그 가운데 여기서 이야기가 되었는지모 르겠으나 國際収支問題를 이야기하지 않고 經済的 効率性만 따져서는 안 된다. 農業이 比較優位가 없다고 해서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지금 어떻 게 되었는가? 작년의 貿易赤字 33억달러와 비교할 때 작년의 農産物

輸入額이 33억달러 정도 된다. 그러므로 國際収支赤字는 農産物 輸入만 없다면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중 특히 穀物輸入額이 작년에 22억달러이므로, 만약 곡물만 自給할 수 있었다면 貿易収支赤字를 작년의 3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國際収支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급을 하려고만 든다면 價格問題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穀物輸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飼料穀物도 요즈음 제기되는 山地開発로 해결한다면 農産物 輸入을 대부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國際収支問題도 개선될 것이다.

工業化하면 國際収支가 큰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결과가 中南美 地域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대의 債務國이 되고 말았다. 이런 債務國의입 장은 工業化의 추진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세계 최고의 倩務 國을 만들어 놓고도 比較優位만 자꾸 이야기하고 輸入해다 먹으며 유리하 다고 지금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물건을 만들어다 팔아 서 輸入해다 먹으면 훨씬 좋다해서 이렇게 되어 나왔는데 지금까지 정반 대로 되었다는 경험적인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卓上 空論的인 이론만 가지고 지금은 안되지만 앞으로는 國際収支 문제가 개 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하지만 앞으로의 비젼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논의해야 한다. 輸入해서 먹으면 物價는 싸지는데 國內에서 생 산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비싸다하고 나오는데, 物價를 결코 독립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物價問題와 國際収支問題는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에 게 國際収支 여유가 상당한 정도로 있다면 物價問題를 쉽게 다룰 수도 있 는데, 지금의 國際事情으로는 어떠한 위협적인 사태가 되더라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사태가 되버리고 말았다.

農業問題를 効率性, 能率性으로만 접근하는 惰性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 그것은 그 理論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이론은 옳은데 과거 20년의 경험이 틀리게 나타나는 것을 重大視하자는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사실을 돌이켜 볼 때 반드시 理論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야지. 자꾸만 지금 식으로 20년간이나 흘려온 문제를 밀고 나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야 말로 農村工業化쪽으로만 접근하는 이제 까지의 惰性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

다시 이야기해 보면 , 아까 KDI에 계신 분이 工業化는 잘돼나가니까 좀더 그대로 두고 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工業化란 그대로 두어서 잘되 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國民的인 희생에 의해서 이때까지 이런 정도로 國際競爭力도 없고 엉망진창인 工業化가 된 것인데 그대로 두고 보자? 그대로 두면 좋지요. 그대로 두면 더 망할는지 모를 겁니다.지 금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너무 희생 을 감수해 온 것 같고 앞으로 미루어 생각하더라도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農業人口가 10% 정도 내려갈 때까지도 農業 이 망하든가 어떻든가 미루어 보자? 좋기는 좋은데, 農村에서 흘러 나오는 人口가 都市로 流入되어 제대로 雇傭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工業化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엊그제 「뉴스위 크|誌에 記事化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先進國을 휩쓸고 있는 失業事態는 물론 不況의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최근의 오토메이션에 의한 生産構造 의 변화에 의해 촉진된 것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工業化가 흡수해 줄 수 있는 人口가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 나라의 工業化가 낙후되 工業部門을 지향하는 많은 低給労動力을 요구하 는 労動集約인 産業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앞서는 工業化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선도적인 部門, 좀더 自動的인 측면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増加하는 失業問題를 감당해 낼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雇傭問題를 생각하더라도 좀더 農業問題를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즈음 농촌에 가보면 빈집이 많다고 하고, 農村의 총자들은 장가를 못가서 都市로 나오고, 農村의 처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하는데, 처녀가 나가니까 총각도 나오고, 총각이 나오니까 처녀도 나오고이래서 젊은이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메카니즘 자체를 고치기 위해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 関稅問題와는이야기가 방나갔지만 이제까지의 関稅政策이 保護関稅의 성격을 떠

지 않았으며 또 그런 성격하에서 輸入政策을 추진해오지도 않았다는 측면에서 우선 이러한 문제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司會: 다음은 全國經済人聯合會 專務理事로 계신 申奉植 선생님께 부탁드린다.

申奉植(全國經濟人聯合會 專務理事): 農業政策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입장이지만 농업이 공업의 기반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를 常識의 범위내에서 이야기 하겠다. 関稅를 농업과 결부시켜 볼 때 이 主題発表를 통해서 느껴지는 문제점은 名目保護率로 표현해 볼 때 농업의 명목보호율이 가장 낮았던 시기인 1974년에서 75년에 農家所得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製造業의 명목보호율이 가장 높았던 때도 바로 그때 였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제조업의 製品에 대한 명목보호율이 제일 높았던 시기였으며 국제적으로 관세가 제일 높은 제품을 농업부문에서 소비하던 시기에 農家所得이가장 높았으며 농업의 명목보호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이것은 어떠한 相関関係가 있는지 농업부문에 関税가 중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농업부문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립다.

다음에 여러분께서도 누누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먼저 農業政策이 선행되고 나서 그 일환으로 関稅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이다. 농업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단순히 상식적인 견지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農業政策을 生産政策의 측면에서 볼 경우 그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농업정책 중 특히 主穀政策은 어느 정도 예외로 볼 수 있겠으나 그밖의 經済作物이나 畜産物의 경우는 보호나 방치나 하는 정책이 이제까지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農業保護의 일관성이 없었던 것 같다.

다음 需給政策을 볼 때 物價安定을 겨냥하는 탄력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경우에는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고추波動이나 여러가지 예로 봐서 농업에는 예측 곤란한 여러 요인이 개 재되어 있어 그때 그냥 바싹 다가가서 정작 문제가 될 때 곤란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면 최소한 한두 달 전에는 과연 예측이 불가능 한 것인가, 기후나 자연조건 등 變化가 심한 것은 사실이나 보다 기민하게 대처할수 없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80년의 糧穀導入과 같은 갈팡질팡하는 그런 정책은 다소 지양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輸入政策이라는 것은 농산물에 있어 필요한 만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한 것이지 보호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본다. 이 문제에대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부가 수입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경직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貿易業者들에게 자유롭게 방치한다면 필요할 때 신축성있게 공급되었을 것이다. 정부의 意志는 하나로결정되어야 실행되지만, 개개 企業 내지 개인의 의지라는 것은 개개의 결정에 의존하므로 다양하고 신축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본다면 輸入을 정부가 장악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民間輸入體制인 경우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價格變動을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主題가 되고 있는 農産物輸入은 농업정책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증되고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논의되어야만 그 방향이 수렴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었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 싶다. 農産物輸入 関稅 및 非関稅 정책은 主穀부문에 대해서 정부수입의 경우는 관세를 低率로 유지하여 價格隔差만큼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民間輸入의 경우는 高率로 책정하여 세입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다.

과거의 경우와 같은 민간수입에 대한 사회의 不條理를 야기시키는 부당이득을 취할 문제발생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국내생산 가능한 품목은 고율로 유지하여 국내생산을 보호해야 될 것이다.

飼料原料用 원자재인 경우는 국내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관세를 低率로 유지했으면 좋겠고 덧붙여 飼料安定基金도 목적에 합당하도록 운용이되어야 할 것이다. 生必品 원자재인 설탕과 같은 것은 저율이 바람직하며, 국내대체생산 가능재는 가능한 한 高稅率로 해야 할 것이다.

司 會; 다음은 학계로 넘어가서 農協大學 學長님으로 계신 朴振煥 선생님께서 토의해 주시겠다.

朴振煥(農協大學 學長) ; 농업 경제학자들이 關稅 문제까지 잘 알고 일 가견이 있다는 것은 무리이다.

양 수길 박사가 명쾌하게 단순화시킨 모델의 新古典主義的(neo-classic) 논리는 결국 長期均衡(long-run equilibrium)인데, 프리드만(Friedman)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長期均衡이 언제 가야 날이 샐 것인가? 短期(short-run)가 가면 長期(long-run)는 자꾸 먼 데로 가버려 결국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평선이될 것이 아니겠는가?

양 수길 박사의 모델이 단순 명쾌하지만, 현실 정책을 반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우선, 양 수길 박사의 論理(logic)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혹시 있 다면 그것은 地價의 문제일 것이다. 일본이나 우리나, 地價가 농사짓기에 는 너무 비싸다. 농촌의 地價가 농업 생산에 의한 가격에서 나온 것이 아 닌 묘한 地價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되어서도 농업 생산에 규모의 경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地價의 문제 때문이다. 일본은 백년 전 호당 경지 면적이 1 ha이었고, 지금도 1 ha이다. 그래서 일본 경제학자들은 결국은 경제 이론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고민하게 되었다. 지금 일본이 경작 가능한 품목은 쌀,채소류, 과실, 돼지, 닭, 우유 등 이 정도이다. 일본에서는 쌀은 과잉 생산이어서 땅을 놀려야 되고, 채소는 비닐 하우스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땅이 일정하 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 과실과 오렌지는 충족되어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닭이나 돼지는 몇 천만 톤씩 사료를 재어 놓고 있 으니 이건 축산업이 아니라 차라리 가공업이 되어 버려 토지를 필요로 하 지 않고 있다. 결국 일본의 토지 이용율은 100%밖에 되지 않아 1년에 그 좋은 땅이 한 번밖에 이용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농업이냐 하고 문제가 됐다. 일본의 新古典主義 경제학의 고민은, 이론은 근사한데 현실적으로는 좁은 일본의 땅이 논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론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規

模의 經濟로 발전해야 하는데, 地價 때문에 이론을 발전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차지농을 하여 대규모로 늘리면 안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땅값이 비싸 임차료가 문제가 되니 이것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일본의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이 약한 입장이니까 그냥 고지식하게 농지 개혁을 다시해서 大型으로 가야 한다고 묘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현실적으로 이건 말도 안되는 것이다.

정부가 관세를 가지고 농업 보호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 왔는데, 정부가 관세를 놓고 어떻게 할 것 같지는 않다. 공산품이라면 몰 라도, 농산품에 대해 일정한 관세율을 정해 놓고 이 메니카즘에 의해자동 적으로 조정하려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우리 나라의 사정으로 보아, 어느 한 정부 부처에 의해서만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유럽의 농업은 중세 봉건 사회 때부터 밭농사이고 축산업이고, 유럽 각국의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산업화 공업화하는 근대화 과정에서 무역 을 할 때 경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영 국과 불란서, 불란서와 서독 또는 덴마크 등등의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는 리카르도 이후의 이론이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으니까 관세에 전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론을 극동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극동 의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중공은 벼농사 중심이기 때문에, 벼농사 과 정에서 산업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쌀은 그만 먹고 전부 서양식 음식으로 전환한다면 몰라도, 자원이 서양식 식품을 생산하게 되어 있지 않은 채 외국의 상품을 수입하게 된 상태에서 관세가 어떻다고 하기는 어 려운 것 같다.

農經研의 자료를 보니農業保護率이니 實効保護率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농업보호를 많이 했다 안했다, 공업보다 많이 했다 안했다, 다른 나라보다 많이 했다 안했다 하고 아주 복잡하게 나열하여, 처음에는 혼동되었다. 결국 KDI 박사들이 실효 보호율이 몇 퍼센트라고 계산해 놓으니까, 여기에 도전하려 계산하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이상하게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든다. 조금전에 양 수길 박사가 논리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농업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의 자원은 어떻고, 앞으로 우

리의 농업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이러한 중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갈 방향은 이 방향인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 이것은 보호해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해야겠고 비관세는 어떻게 해야겠다고 했으면, 아마도 양 수길 박사가 일률적인 8퍼센트 관세율을 주장하기 힘들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부터 그런 복잡한 개념을 떠나서 현실을 하나 하나 생각해 보자.해 방 이후 농업에 대해서는 보호고 뭐고 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너무 많이 포기한 것 같다. 예를 들어 해방 직후 목화는 말도 없이 포기해 버렸다. 지금 목화 재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에는 비교 우위고 뭐고 하는 논의가 없었고, 밀도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해 한 마디 도 없이 전부 포기했다. 옥수수는 60년대부터 강원도 옥수수를 보호하려 고 농림부가 애를 썼다. 50만 톤을 도입할 때는 그래도 좀 보호하려고 상 당히 애를 썼다. 그러나 점점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 현재 10만 톤이 생산되고 200만 톤을 도입하는데, 그까짓것 생산하나 마나 아니냐 하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200만 톤이라는 큰 것을 도입하는데 10만 톤 정도는 좀 살려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역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 을 것 같다. 일본의 경우 2,000만 톤을 가져오지만 일본 국내에서 조금 이라도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그대로 할 수 있 는 만큼은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스처라도 한다. 그에 비하면 우리 나 라의 경우는 경제적인 효율이 없다는 이유로 10만 톤은 포기하는 것이 좋 지 않느냐, 가능성이 없으면 해 볼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러나 큰 방향 장기 균형(long-run equilibrium)을 추구하더라도 단기 (short-run)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옥수수, 밀, 목화 등등 이미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이 끝나버렸다. 그나 마 조금 남아 있는 것이 大豆라고 할 수 있다.

대두 문제는 좀 새로운 면을 고려해야 된다. 여담이지만 과거에 USDA의 참사관이 와서 한국은 왜 大豆에 관세를 부과하느냐, 해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답변한 것은, 밭에 콩을 경작하지 않으면 여름에 심을게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왜 채소를 심으면 되지 않느냐 하

고 반문해서, 내가 한 이야기가, 채소는 몇 만 정보만 더 심으면 수급에 문제가 크게 생기고, 대두는 수십만 정보의 토지를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금년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채소나 과일이 헐한데,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마는 생산자 측면에서는 큰 문제이다. 이유는 보리를 경작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맥류를 심을 경우 5월까지 땅을 잡고 있는데, 5월에 보리를 수확하면 대두를 심게 된다. 그러나 보리를 경작하지 않으면 3월부터 밭에 무슨 채소를 심어야 하느냐 하고 생각하다가 호박, 고추, 봄채소를 심게된다. 예측을 아무리 잘해 보았자 생산이 너무 과잉되니, 이 딜레머의 해결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장기적인 면에서의 방향이 어떠하든간에 단기적으로 너무 조급하게 하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 형편을 감안하여 몇 년 정도는 이정도,그다음에는 이정도, 이렇게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이다.

아울러 쇠고기 문제도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농민이 소득을 올릴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쌀이나 채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돼지와 닭은 기업농이 다 해버려 일반농은 할 것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소라도 한마리 키워야 되겠는데 호주 소가 너무 싸게 수입되다 보니 이것도 문제가되어 말이 많게 된 것이다. 또 보리 대신 경작하는 맥주맥도 웬만하면 좀심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다. 유채유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버터 · 치즈를 예로 든다면, 이제 우리 나라도 호주의 농림장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한국이 공산품을 수출하려거든 호주의 버터 · 치즈를 수입하라는 협상이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농림장관이 상공장관을 견제하게 시키고 문제를 일으켜 국내 사정이 곤란하다는 등등의이유를 붙여, 다음에, 다음에…, 내년에, 내년에…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은 농림장관이 양보를 하는 식의 형태로 점진적으로 하나 하나 포기내지는 개방해 가는 것이지, 우리처럼 미리 계산기에 집어 넣어 가지고 상대편에서는 아무 소리 안하는데 귀찮다고 전부 포기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의 현재 식량 자급율은 50%인데, 그것은 70년대 이후에 경제 대

국이 된 연후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일본이 곡물 메이저로 미쓰이, 미쓰비시가 시카고 국제 곡물 시장에 참여하여 국제 양곡 시장의 메이저 못지 않는 능력을 갖춘 위치에서의 현상이다. 그이전에는 관세, 비관세 장벽이 아주 복잡했던 것이다. 우리의 현재 형편에서는 공업국의 초기 단계에 있는, 일본과 비하면 천양지차인데도 지금 벌써 식량 자급율이 50%로 떨어졌읍니다. 50%로 떨어졌으니까 골치아프다고 해서 한 묶음으로 관세를 정해 놓고 처리하자는 논리는 농업이 없어도 좋다는 것인데, 농업이 없어지면 장기균형은 빨리 이루어지겠지만, 경제외적인 요인을 어떻게 감당할지정말 무섭다.

나도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제적인 변수만 고려한 効率經濟(efficiency economy)에서의 명쾌한 모델은 경제학적인 면에서도 좋지만 그것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많은 요인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司 會;다음은 學界에서 外國語大學의 經濟學科 教授로 계신 朴炳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다.

朴炳鎬(外國語大學校 教授); 한국의 농업 문제를 고려하는 경우, 농산물의 가격을 중심으로 보호할 것이냐 아니냐, 즉 關稅를 중심으로 하는 가격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는데, 농업 보호의 면에서는 농산물을 가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은 자연, 토지, 기후 등등의 이동될 수 없는 생산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연 자원은 일단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농업의 생산 기반 문제도 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가격을 중심으로 한 經濟效率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되겠으며 非經濟的인 문제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농산물 보호의 목적이 가격에만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경제 효율을 감안하여 비경제적 요인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自給度의 현명한 향상 방법이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保護率을 검토할 때의 측정 기준이 무엇으로 산정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즉 生産者價格이 기준으로 되었느냐 市場價格이 기준으로 되었느냐 市場價格이 기준으로 되었느냐 하는 것이 고려의 대상이 되야 하리라고 본다. 市場價格을 근

거로 산정됐다면 우리 나라 농산물 시장의 왜곡된 바 합리적인 유통 구조를 생각할 때 즉 유통 마진의 폭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것이 감안되어야하겠으며, 工産品價格과 비교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關稅에 의한 價格調整의 결과, 보호의 목적이 되는 生産者 保護効果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가 중요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나라의 과거 수출 경쟁력의 증대 방안은, 生産性 增大와 要素價格의 두 면만을 생각한다면, 생산성 증대보다는 요소 가격의 상대적 상승 억제내지 하락에 역점을 두어 수출 증대가 모색되었다고 본다. 要素價格에 있어 비중이 지대한 임금을 상승 억제내지 상대적인 하락을 목적으로 한 정책하에서 穀價는 상대적으로 하락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농업을 이제까지 가격면에서 보호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生産者價格과 消費者價格 사이에 괴리가 큰 농산물에 있어 어떻게 보호 효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겠느냐는 문제를 고려할 때 농산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關稅가 價格調整에 그치는 것이 아닌, 生産性 保護에 미치는 영 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울리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司 會;다음은 業界에서 貿易協會 常務理事로 계신 林東昇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다.

林東昇(貿易協會 常務理事); 내 자신이 貿易協會에 있고, 수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자유화를 찬성하고 農業保護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해야 되고, 더군다나 國內産業保護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제가 양박사와 항상 의견을 같이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양 수길 박사의 명쾌한 이론과 농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 사이의 차이점을 얼른 찾아내기 어려울 것 같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찾아 보 자. 그것은 현실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점, 즉 전제가 다르다는 이야 기이다. 예를 들어 農業部門에 대한 保護를 제거하자는 논리는 능률 위주 의 比較優位 論爭이 농업이라는 산업에도 마찬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전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제는 농업 부문에 대한 보호를 제거할 때 거기서 유출되는 노동력과 그에 따른 노동력에 대한 就業機會를 흡수할 여력이 공업부문에 있다는 전제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더 발전시켜 産業保護의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比較優位産業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자유화하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많은 노동력과 이에 따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비교우위 산업이 존재한다는 전제이다. 즉 국제적으로 자유화했을 때 충분히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國際比較優位産業의 기반이 있다는 전제이다. 이것은 산업 기반이나 농업 기반이나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개방했을 경우 농업이 파괴되고, 산업이 파괴되고, 나머지의 제한된 산업을 가지고 지탱했을 때 거기에 雇傭問題, 國際收支,産業構造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초점인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혂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자. 세계가 完全自由競爭 體制라고 한다면 우리 나라도 나름대로 희망이 있다 고 본다. 그러나 경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후진 국은 후진국대로 자국의 産業保護나 勞動力保護를 위해 제한된 일정한 만 큼만 개방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선진국을 상당히 개방된 시장으로 보 지만 선진국과 경쟁할 때 우리 나름대로의 제약이 있는 것이다. 技術水準 에 있어서나, 資本水準에 있어서나, 勞動力水準에 있어서나, 분명한 제약 이 있읍니다. 여기서 노동력의 문제에 있어 우수하다는 것은, 低賃金을 전 제로 해서 노동력이 우수하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아니 다. 기술이 100년 앞서고 資本發展段階가 훨씬 앞선 선진국 예를 들어일 본과 1:1로 경쟁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터인데, 살아날 가망이 있는 산 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무제이다. 우리는·나름대로 노력도 해 왔 고, 그랬는데도 잘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生産性 向上을 위해 노력을 하고,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노 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앞서 갈 자신이 있느냐를 검토해 보아 야 하는 것이다. 실제 지금 국제적으로 比較優位를 가진 산업이라고 내놓 을 것이 몇 개가 되는지 상당히 회의적인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국제 환경이 좀 달라졌다. 60년대의 경우는 비교적 自由貿易의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팽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쟁상 취약점이 있지만 후진국에 대해서는 경쟁의 우위를 차자할 수 있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전부 개방한다면 우리가 설땅은 충분히 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자원을 보다 高生産性 部門,더 합리적인 부문, 더 능률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농업 부문의 상당 부문을 포기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수입해다가 高生産性 部門에서 수출하여 國際收支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상의 두 가지현실에 대해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양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본다. 앞으로 모든 부분에 자유화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쟁점이 이런 문제에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工業部門이 현재 입장으로서는 이런 것을 모두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본다.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지만 中共의 低賃金과의 경쟁 문제 등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을 감안할 때 工業部門이 부담할수 있는 능력이 현재로는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우리는 제한된 자원만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국제 경제의 상황과 우리 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신중히 고려해서, 天然的 賦存資源을 갖고 있는 부문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미래의 比較優位産業을 점진적으로 튼튼하게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이다.

일부 産業部門에서도 농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왜 미리 포기하려는지 안 타깝다. 우리가 競爭能力이 없으면서 전부 開放하였을 때,競爭力 培養보 다도 産業이 파괴되어 國際收支問題라든가 경제 발전 문제가 해결되기 보 다도 파괴될 우려가 있다. 高生産 部分도 있지만 低生産 部分, 자료에서 도 지적한 바와 같이,農村의 노동력은 低生産 勞動力이므로 그것에 합당 한 資源에 맞는 産業을 병행해서 발전시켜야 하므로 農村部分의 保護가 불 가피하다고 본다. 司 會;다음에는 學界에서 産業技術研究院의 首席研究員이신 尹埴선생 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尹 埴(產經研 首席研究員);지금까지 논의된 이야기를 들어 보면 農業 을 保護할 필요없다는 입장과 農業을 계속해서 保護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保護해야 한다는 입장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保護 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對外的 競爭狀態로부터 保護育成하면 어느정도 競爭力이 생길터이니까 적정한 기간 동안만 保護하고 그 후에는 保護하지 않아도 된다는 保護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經濟外的인 因이 있어, 競爭力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保護하는 것이 아니고,앞으로계 속해서 保護해야 한다는 保護가 있다고 생각한다. 農業을 보호해야 한다는 쪽은 후자에 속한다고 본다. 즉 어느 기간 동안 保護하면 다른 나라에서처 럼 農業技術이 革新되어 農産物의 生産價格이 낮아지고 大量生産이 가능하 게 되어 그때까지만 保護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農業에 투입되는 土地 나 기타 資源이 다른 部分에 쓰이지 않을 테니까, 즉 農業資源의 社會的 機會費用이 비싸지 않으니까 國內資源을 活用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農 民듬에 대한 대책도 없으므로 保護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는 더 効率的이고 더 價値있는 生産으로 農業에 투입되고 있는 資源이 흡 수될 것이고 그때가서 차츰 保護를 해제해도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입장을 보면 후자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느껴지고, 오늘의 論議도 關稅政策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우리 나라 農業을 어떻게 産業政策的 차원에서 育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問題에 더 비중이두어지게 된 것 같다. 그러므로 關稅政策이라는 제목을 붙이기 전에 우리나라 農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심층 토의하여야할 것 같다.

支援手段 가운데 財政的인 면, 金融的인 면 등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關稅는 그 하나이므로, 農業을 保護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호해야 하고 보호하는 政策手段으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전체 윤곽중에서 關稅라는 부분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農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農産物 生産政策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農水産部,經濟企劃院,財務部, 또 研究所에서는 農經硏과 KDI 측이 끊임없이 의견 대립을 해온 난제였 던 것 같다. 이 시점에서 品目別로 農産物을 어떻게 증사시킬 것이냐. 어 느 정도 自給率을 올릴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關 稅問題는 아무런 結論도 얻지 못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덧붙여서 막연하게나마, 세계적으로 보아 農水産物 특히 食糧의 需給展望 이 결국은 供給이 부족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나 하고 염려가 된다. 그렇 다면 현시점에서는 費用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불리하다 하더 라도 食糧難을 더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食糧의,즉 農産物 의 生産基盤을 상실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안간힘을 써야 할 것 같다. 그리 고 또 하나는 우리 나라에 아직도 農産物을 生産하는 土地 등의 資源이 社 會的 機會費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별로 비싸게 치이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따라서 農産物의 絶對的 價格水準이 외국보다 좀 비싸다. 하더라도 農業을 안하고 그 土地를 다른 産業에 더 効率的으로 이용함 수 있는 상태 도 못된다. 勞動力도 마찬가지여서 農村의 勞動力 構造가 老齡化, 女性化 하는데 이를 機械化 하다든지 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 나라는 完全雇傭狀態에 있지 못하고, 노동력을 農 業에 투입하면 다른 生産部分이 그만큼 지장을 일으킬 만큼 農業勞動力의 機會費用이 높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듯 아직도 우리 나라의 資源의 活用度는 낮은 상태라고 본다.

政策이라는 것은 長期的 方向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또 長期的인 方向이 設定되더라도 短期的으로 취해야 할 政策의 내용이나 수단은 다르다고 본다. 우리 나라의 關稅法改正의 과거를 보면 대충 2년, 짧은 것은 1년 만에도 개정이 되고는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KDI에서 말한 바와 같이 政策手段의 中立性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關稅를 어떻게 손질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 하나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나라에 比較優位를 나타내는 指標라고 할 만한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교과서식으

로 말할 때 比較優位란 比較生産費를 가지고 2 國間 2 商品만 놓고 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수많은 품목, 수많은 나라들 사이에 絶 對優位 劣位問題가 아닌 比較優位의 문제라 하다며, 우리 나라에서 생산 되는 상품, 즉 農産物을 비롯하여 복잡한 工産品에 이르기까지 靜態的 動 態的 觀點에서 다 보아야 한다. 政策支援을 안한 狀態에서의 工産品의 國 際費用과 農産物의 平均費用을 비교하고 수많은 품목을 다 비교해서 어느 품목이 다른 품목에 비하여 費用이 더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을 포괄한 指 標라 할 만한 것을 문외한인 탓인지 못보았다. 産經硏에서도 과거에 우리 나라 輸出品의 國際競爭力 比較優位 分析을 한 것을 보았는데 현실적으로 비교우위의 개념을 산출할 때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전문적으로 보게되다. 예를 들어 顯示的 比較優位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정하 나 라의 특정한 商品의 輸出額에 대한 比重을 세계에서의 비중과 비교한 國 際競爭力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相對的으로 輸出을 많이 했느냐 하는 結果的인 測定에 불과한 것이다. 수많은 商品의 수준을 비교해서 우리 나 라 工産品과 農産品이 초기 단계에는 다른 나라보다 비쌌었다. 그런데 어 느 商品이 다른 商品에 비해서 덜 비싸고 더 비쌌느냐 하는 문제를 測定 한 統計를 제가 보지 못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나라의 農産物도 品目 마다 형편이 다를 것이고 工産品도 형편이 다 다를 것이다. 개괄적으로이 야기해서 工産品의 費用 比較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막대한 지원을 안했더 라도,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租稅減免 혜택이라든지 기타 금융 혜택 같은 것을 안했더라도, 과연 工産品이 農業에 비해서 比較優位가 있다 없 다 하고 함부로 성급하게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農産物 중에서도, 통계를 보니까, 한때 상당한 기간에 自給率이 100% 또는 그 이상 된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完全自給될 수 있는 실적이 있 었고 또 상대적으로 보아도 무리한 것 같지 않다. 國內資源의 100% 活 用이라는 점에서 또 특히 食糧을 중심으로 장기적 세계적 需給展望으로보 아서 계속 生産基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나라의 食糧貿易은 대체로 管理貿易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 아닌가? 쌀을 輸入할 때 民間業者가 자유로이 輸入하는 것

도 아니고 정부가 그 해 그 해 國內生産의 정도, 需要의 정도를 대충 예측해 가지고 모자라는 만큼 수입하는 것이다. 예측이 안맞아 들어갈 때도있고 그래서 파동도 일어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 輸入割當이나마찬가지였지 않은가? 그러니 關稅率을 높여 보았자 政府收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낮추더라도 政府糧穀放出政策에 의해 적정한 선에서 穀價가결정되고 나머지는 糧特에 넣는다든가 하여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마찬가지이다. 즉 關稅가 높든 낮든 간에 輸入價格과 國內價格의 差額은 國庫로들어가는 것, 그런 면에서 關稅率은 食糧問題에 있어서는, 保護의 効果가비슷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農水産物 生産政策에 관한 全體的인 테두리를 결정하고 保護를 과거의 實績 또는 근본적인 安定性을 보고서 몇 가지 중요한 農水産物에 대해서는 自給率을 높이는 방향으로 增産策을 쓰되,關稅政策은 그러한 增産政策의하나의 政策手段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본다. 과거에 KDI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른 일반적인 關稅問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關稅政策보다는 다른 國內補助政策이 더 効果的이라고 한다. 그러한 이야기는 그라프 위에서의 분석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關稅아닌 다른 補助政策을 쓸때 그 財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대답을 못해 주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關稅政策도 무시 못할 하나의 保護政策手段으로 계속 사용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司 會; 다음은 農民을 대신해서 農協의 調査部長으로 계신 徐箕源 선생 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다.

徐箕源(農協中央會 調査部長);小農經濟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日本의 예를 많이 참작해야 될 것으로 본다. 日本은 1963년에 GATT 11 條件으로 이양하였고, 20년 동안 여러 가지 政策手段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끌어 왔다. 현시점에서, 表에도 나와 있지만 自由化되지 않은 品目이 27개이고 그중에서 農産物이 22개인데, 그것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 CCCN의 4자리 수까지이다. 이것은 결국 類別로 묶어 놓았다는 이야

기이다.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保護政策을 쓰고 있다. 大豆 같은 것은 日本 國內價格이 國際價格에 비해서 3배나 비싼데도 大豆를 增産시키기 위해서 지난 해만 하더라도 農家에 60 kg 한 가마에 400엔 정도의 교부금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

사실상 현시점에 와서도 그들 주장으로는 農産物에 대한 輸入自由化가 98 퍼센트가 되었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그나마 자유화된 품목의 關稅도, 우리는 彈力關稅 중 에서 割當關稅 정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彈力關稅를 品目別로 하 나 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해서 GATT19條에 나오는 가 너무나 많다. 그것도 모자라서 行政的인 措置로서 割當이나 自律規制 를 요청한다든지 또는 行政指導나 輸入事前許可制라든지, 지금 우리가 生 絲割當을 받아 놓고 있지만 이 핑게 저 핑게 대고 들여가지 않는 것 같이, 輸出當事國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해 오고 있다. 또 의 農業保護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政策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管理 價格制度라든지 價格安定帶政策 또는 指標價格制度라든지, 增産을 위한 교 부금제도라든지, 또 그것도 모자라서 각 해당 품목별로 전부 法을 만들어 서 채소는 채소대로 육류는 육류대로 또는 기타 유지류는 유지류대로 축 산물은 축산물대로 類別이 아닌 전부 品目別로 法을 만들어서 뒷받침하고 있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세계적인 貿易自由化 추세에 따라서 적절히 대 응을 해야겠지만 아까 朴 學長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農業이 가지고 있 는 基本的인 政策으로 얼마만큼 뒷받침하느냐 하는 姿勢問題이지 關稅하 나만 떼어 가지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關稅政策에 있어서, 실제의 다양한 즉 自由化는 類別로 해놓고 내용에들어 가서는 구체적으로 品目別로 전부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서 물론 立案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겠지만, 日本이 20년 동안해 온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과정에서 오늘날 일본에서의 農村所得이라는 것이 農外所得에 87%까지 依存하고 있다. 63年度에는 40%미만 이었는데 20년을 지나는 동안 87%까지 依存度가 높아진 것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3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

루 아침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고, 긴 안목으로 내다 보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農水産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부처간의 협조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司 會;다음에는 經濟紙를 대신해서 每日經濟의 趙長鎬 論說委員께서말 씀하시겠다.

趙長鎬(每日經濟 論說委員);전문가가 아니라서 느낀 소감만 간단히 말 하겠다. 나는 農業保護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 에서 그동안의 農産物 關稅政策이 農業保護라기보다는 物價安定이나 기타 다른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쳐 왔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幼稚段 階에 있는 農業保護를 위해서는 우선 높은 關稅率을 책정하는 것이 "마땅 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편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關稅政策만으로 農 業을 保護育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무제가 있다고 생각하다. 우리 의 農業保護를 關稅政策에 의해서 얼마나 끌고 나갈 수 있겠는가, 尹埴 博 士의 말씀과 같이 장기적으로 保護를 해야 한다면 關稅政策만 가지고는 해 나가기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이런 면에서 關稅政策과 함께 보다 効率的 인 다른 方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農業保護를 關稅政 策 이외의 것, 즉 金世源 教授의 말씀과 같이, 賦課金이나 生産農民에 대 한 재정 보호, 割當制, 유통 구조 개선, 價格持支制 등을 關稅와 함께 시 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農産物에 대한 關稅를 KDI에서 주장하듯이 단순 화하려는 데는 찬동할 수 없다. 農業關稅 문제는 經濟効率性보다 國民食 糧의 안정적 확보라는 百年大計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國內生産이 어렵고 代替効果가 적은 품목은 당 연히 低率이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저율로 해서는 안되겠다. 또 低率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差額으로 農業生産基盤 擴充에 援用함으로써 궁 극적으로는 우리가 自給體制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내외적으로 처해 있는 요구에 副應할 수 있는확 고한 長期政策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開放과 保護의 문제를 조화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農民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生産意慾을 증대시

킴으로서 자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司 會; 다음은 畜産部門에 대해 축산 농가를 대신해서 畜協 中央會의 柳南烈 理事께서 맘씀해 주시겠다.

柳南烈(畜協 中央會 理事); 본인은 畜産 실무 분야에서만 계속 종사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關稅制度나 經濟學 계통에 깊이 공부할 기회를 못 가졌던 사람이다. 단지 그런 실무 면에 종사해 오면서 느꼈던 것을 축산 관계 품목별로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關稅制度를 單純化하느냐 또는 産業을 品目別로 保護하는 면에서 關稅 率을 달리 하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인 것 같다. 우선 需給을 안정시키고 價格을 악정시키면서 品目別로 生産與件이나 풍흉의 여건을 감안해서 關 稅率이 다양화되어야 하겠다. 彈力的으로 운용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첫째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품목별로 말하면 種畜 같은 것이 많이 도입되 고 있고 精子나 精液 같은 것이 도입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 畜産物價格이 國際的으로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 소, 돼지 등 生畜價格으로 비교 할 때 日本보다도 비싼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生産費가 비싼데, 種畜에다 關稅를 賦課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현재 種畜은 基本稅率이 20%로 되어 있지만 잠정적으로 免稅되고 있다. 앞으 로도 계속 이러 것은 免稅 되어야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畜産物에 있어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25 %로 되어 있다. 쇠고기는 문 제가 社會的으로도 크고 현재 입장에서는 도입을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입을 전제로 했을 때 關稅내지 基金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덧붙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75 년도의 畜産物 消費量을 보면 國民 1人當 6 kg 정도이다. 63 년도에 3 kg 먹었는데 12 년 동안에 배로 늘었고, 80 년도 기준으로는 11 kg에이르렀다. 12 년 동안에 3 kg에서 6 kg으로 늘었지만 다음의 6 kg에서 11 kg으로 느는데는 3~4 년밖에 안걸린 것이다. 畜産物의 需要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그중에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24 %이다. 農水産部나 畜協이나 쇠고기를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

을까 하고, 무던히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나 選好性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쇠고기의 需要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輸入을 안할 수 없을 것 같다. 문제는 비싼 쇠고기를 比較優位論에 입각하여 추방할 것이냐, 그래 서 되겠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것이다. 79년말 소의 수효는 156 萬頭, 80년말에 138萬頭, 81년말에 128萬頭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마약 輸入을 안한다면 5~6년 후에는 10餘萬頭에 불과한 수효만 남계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耕種도 못하는 형편에 이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다. 그러니 輸入해야 되겠고 輸入을 하되 價格政策面에서 과거의 경험으 로 보아서는 쇠고기가 2,000원일 때 돼지고기 1,000원으로 하면 적정하 게 균형이 맞아 소비되는 것으로 느껴 왔는데 돼지고기가 1,000원 이하 가 되면 돼지고기 需要가 커지고 1,500원 하면 쇠고기 需要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런데 현재의 쇠고기 값과 돼지고기 값을 비교해 보면 반 정 도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다. 문제점은 輸入 쇠고기가 그 중간점에 끼어서 돼지고기와의 차가 극히 적기 때문에 쇠고기에 需要가 쏠리고 있고, 그래 서, 돼지고기의 需要는 늘지 않고 輸入 쇠고기의 需要는 늘고 있는 것이 다.

금년에도 精肉으로 39,000 톤을 도입하는 것으로 政府는 결정해 놓고 있지만, 이것은 枝肉으로는 50,000 톤이 넘는다. 頭數로 환산하면 25萬頭,이만한 양을 계속들어와야 하는데, 가능하면 쇠고기 輸入量을 줄이고 價格을 안정시키려면 輸入 쇠고기 값을 上向調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關稅도 부과하지 말고, 엊그제 政府에서 발표하였지만, 10個年計劃으로山地를 개발하고 畜産을 진흥시키는 데 6,000億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그 기금을 國庫가 다 부담할 수 없으니, 이러한 쇠고기나 畜産物의 輸入差額을 基金化하여 山地開發이나 畜産振興에 投融資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稅率은 오히려 낮추어 조정하였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또한 畜産部分에서 乳製品 따위는 품목별로 다르겠지만 粉乳는 25%, 버터는 40%, 代用乳原料는 25%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현재보다 오히려 높였으면 한다. 아직 幼稚한 産業分野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유로이들어온다면 우리 나라 酪農은 하루 아침에 零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

로 이런 것들에 대한 關稅率은 높이 조정되었으면 한다.

飼料穀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옥수수인데, 基本稅率이 20%이지만 割當關稅로 5%가 부과되고 있다. 우리 나라 生畜價格이 세계적으로 비싸 여건이 불리한데, 飼料에 대한 關稅率마저 인상한다면 生産費가 더욱 높아져 養畜家들이 지탱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下向調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酪農機器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하면, 國內産業 保護를 위하여 작은 트랙터는 輸入이 규제되어 있고, 대형 트랙터는 들여올 수 있지만 稅率이 높다. 日本의 예를 보자. 日本製品이 좋다고들 하지만 그들 試驗場이나 種畜場에서 트랙터들을 日本製를 쓰지 않고 있었다. 어째서 그런가 물었더니, 西歐製品만 못해서 導入해다 쓰고 業者들의 競爭意識을 고취시켜 機械産業을 發展시키기 위해 더러 갖다 쓴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도 트랙터 등은 關稅를 낮춰서 山地 開發하는 데 導入된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司 會;綜合部分으로 들어가서 韓國日報 論說委員으로 계신 金定台 선생세서 대충 지금까지 나온 말씀을 정리하시겠다.

金定台(韓國日報 論說委員); 종합정리보다는 코멘트를 간단히 하겠다. 關稅政策協議會라는 이름 아래 좋은 말이 오갔는데, 왜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으며, 農水産物은 무엇이며, 農水産物政策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目的은 무엇이냐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食糧을 확보하고, 農漁民의 所得增大를 통해 國民經濟의 均衡發展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物價安定을 이루어 경제안정에 기여하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農水産政策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目的이 關稅政策만으로 달성하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만을 고집하다가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나 반작용도 있겠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와 반성이 가해져야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農水産部門이 아닌 鑛工業部門에 있어서도 産業保護政策的인 關稅政策 機能이 제대로 作用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1월 중순경에 GATT 閣僚會議가 열린다고 하는데 存廢가 결

렸다고 한다. 한때는 IMF, GATT가 自由經濟의 兩大支柱가 되어 自由 開放政策에 의해서 關稅率만 均等하게 내리면 모든 것이 國際的인 均衡이 취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했으나, 그렇게 안되는 것이 증 명되었다. 앞으로 農水産 關係에 있어서도 關稅만 가지고 될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農經研이 이 세미나에 제시한 자료 38페이지에서,主要國의 殘存輸入規制品을 나열한 가운데서, 감명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西獨이 감자를 규제, 다시 말하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西獨 감자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벌써 1950년대부터 보조를 준다고 하여 EC에서부터 감자 전쟁 운운했던 것이고, 베네룩스에서도 감자는 우리의 쌀과 마찬가지이다. 比較生産에서는 불리한 베네룩스에서 감자를 온존시키기 위해서 감자 輸入을 금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스웨덴 같은 나라가 寒帶에 속해 있으면서도 밀을 계속해서 온존시킨다는 것은 食糧安保的 次元에서일 것이다. 덴마크도 酪農國家이어서 이 품목이 비교우위가 있다지만, 감자 같은 主穀은 온존시키겠다는 것이다. 朴振煥 教授가 表現한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지연 정책을 쓰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음성적으로 자국의 농업을 키워온 것이 日本農業이고, 日本의 쌀이다.

輸入規制에 있어 關稅障壁이 높은가 非關稅障壁이 높은가? 非關稅障壁이 어느 면에서는 더 높은 것이다. 그것은 農畜産物關係 檢役이다. 害蟲이 묻어 온다, 加工食品에 대한 검사를 한다는 등 非關稅障壁을 가지고 保護하는 것을 볼때 우리 農業을 關稅만 가지고 保護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 따라서 지금 말한 여러 가지 手段을 참작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 특히 우리가 日本을 미워해서 克日克日하지만, 日本이 高度産業社會를 이룩하고 고도의 工業國家를 이룩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農業을 저 정도로 온존시켜 온데 대해서 보다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인상을 갖게된다.

司 會;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셨던 檀國大學校 教授로 계신 金東熙博士께서 종합을 하시겠다.

金東熙(濟國大 敎授); 우리는 이 시점에서 關稅政策을 이야기 하다가 農 業政策 그리고 우리 나라 經濟政策의 基本問題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 였다. 오늘날 日本이나 EC같은 나라가 왜 저렇게 高所得國家이고 社會段階에 있으면서도, 農業과 食糧에 있어서는 양보할 줄을 모르는가. 지난 79년에 끝난 도꾜 라운드(東京 Round)도 무려 79個月이라 하는세 월을 끌어 가면서 세계 貿易障壁, 즉 關稅率引下나 非關稅障壁을 낮추기 위해서 前無한 최장 기록을 가지면서 협의를 했지만, 결과는 우리에게 희 망보다는 실망을 많이 주었다. 開發途上國家들은 工産品을 좀 더 많이 輸 出해서 輸出主導型 開發戰略을 알차게 해 보려 하였으나, 그 사람들이 거 기에 응하지 않았다. 결과는 關稅를 28~30% 낮추었으나, 關稅는 이미 그 重要性이 대단히 감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輸入國이나 상대방 政策 의 예측성을 좀더 높이는 정도로 하고, EC의 農業保護政策에 대해서는 뚜 력하 결론 없이 國際的인 酪農製品委員會, 肉類委員會 정도로 정보를 교 화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세계의 需給事情을 검토하여 각국에 참고 하도록 하는 정도에서 낙착되고 말았다. 이는 각국이 食糧을 가지고는 從 屬性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基本 目標이기 때문이다. 아무리日本 이 지금 경제 강국이 되었다고는 하나 食糧 때문에 美國에 덜미를 잡히면 꼼짝을 못한다. EC도 域內의 食糧自給이 양보할 수 없는 목표이고 日本 도 糧穀의 自給度는 33%에 미달하지만 總食糧自給度는 60% 정도이다. 그래서 이상 더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이 國際政治的인 자기들 生存의 戰略 이다.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輸出을 해야 하는데 輸出市場은 늘리지 못 하면서 國內에 美國을 중심으로 한 여러 先進國의 農水産物에까지 開放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國內에는 失業者가 많다. 과거 처럼 일년에 輸出이 30~40%씩 신장하던 상황에서는 農民이 10% 아 니라 5%가 된들 잘만 살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나 현 여건하 에서는 우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급속히 무역이 성장해서 공업화가 추진될 여건은 되어 있지 않다. 日本이 과거에 걸어 온 길을 보며, 國際優位를 확보한 것이 食糧값을 싸게 해서가 아니라 技術開發에 총력을 기울여서 오 늘의 技術立國을 達成해서 EC나 미국을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農産物이 賃金財(wage goods)라 해서 낮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1970년대의 세계 공황 이후로어떤점에 있어서는 1930년대보다도 더욱 심각한 산업구조 개편을 강요당하고있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 이미 福祉國家 단계에 들어서 대단히 어려운 社會費用 문제가 따르지만, 英國에서 복지 국가 반성론이 나올 정도로 세계경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60년대와 같은 상태로 돌아 가려면 상당한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과거의 外部指向的 輸出主導型 戰略만 가지고는 國民經濟를 꾸 준하게 건실하게 발전시키기는 어려운 여건하에 있다. 이러한 여건의 화를 직시해서 보다 더 내실을 기하는, 國內의 賦存資源을 개발하고, 內의 半失業 또는 失業의 현실을 고려해서 産業政策,物價政策,雇傭政策 을 총망라해서 關稅政策을 보아야 할 것이다. 또 基準으로 분석하고 있는 名目保護나 實効保護를 計算할 때는 自由貿易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어 디까지나 部分均衡의 接近이 아니겠는가? 自由貿易을 해본 적이 없는데 도 自由貿易하에서의 價格을 전제로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참고 자료로 쓴다면 몰라도,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느냐 할 때는 여러 가지 要因을 함께 고 려해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쇠고기를 枝肉 單位로 5萬톤을 輸入하고 있지만, 만약 규제를 풀어 10萬톤이나 15萬톤, 이렇 게 輸入한다면 國際 쇠고기 값도 대폭 올라 갈 것이다. 그래서 현재 比較 優位論이나 保護率 計算은, 價格의 不變을 전제로 하지만, 사실 문호를개 방하면 國際價格이 크게 變動하고 또 현재의 國際價格이란 덤핑價格이 대 부분 아니겠는가? 지금 生産費로 따져 보면 돼지고기 값이 日本보다 싸 고 美國과 비슷하지만 國際價格은 그렇지 않다. 全脂粉乳 같은 것을 보면 우리 나라 生産費가 2,300~2,400 달러가 들어 가는데 國際價格은 1,500 ~ 1,600 달러이고 生産費는 뉴질랜드나 아르헨티나가 제일 싸다. 그 사람 들은 곡물을 안 먹이고 버터나 치즈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牛乳도 생산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입찰해 보면 EC가 들어온다. EC는 1년에 약 150 萬톤 가량 在庫가 남는다. 그러니 剩餘農産物 處理價格으로 계산한다면, 큰 誤謬를 범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점이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農業政策도 歐洲의 農業政策과 같이 關稅率을 農家所得이나 國民食糧으로 보아서 중요한 것은 좀 낮추고 그 대신 課徵金形態로 基金確保를 충분히 해서 構造改善이나 生産基盤을 擴充하는 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競爭力을 強化하는 데 投資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政府豫算에 의지해 가지고는 草地開發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農水産部 豫算이 總豫算의 겨우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아 生産基盤의 擴充,競爭力 向上을 위한 投資에 뒷받침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關稅率을 낮춰서 그 차액을 기금으로 확보해서 農業을 競爭力 있는 産業으로 育成하여야 하고 동시에 所得分配면도 보아야 한다. 돼지나 닭과 같이 規模의 經濟性이 있는 것은 市場競爭에 맡겨 놓으면 大規模化,獨占化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돼지도 2萬頭, 3萬頭씩 키우는 業體도 생기고 해서, 副業畜産이나 100頭 200頭나 몇백 頭 키우는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다.

台灣 같은 나라에서는 肥肉豚은 100 頭,種豚은 20 頭 이상인가를 키우려면 政府로부터 許可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畜産公害를 일으키지 않고 畜産과 耕種을 有機的으로 연관시켜서 地力을 향상시키고 農業內部에 있어서의 所得分配面도 생각해서 小農이 沒落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台灣이나 日本보다 農外所得이제한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 쌀 이외의 알파는 무엇인가. 畜産과 園藝作物인데 특히 畜産이 유망해서 지난 7월 이후 소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그것도 所得機會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大規模化 企業農化에 制動을 걸어일반 副業畜産을 活性化 시켜서 所得分配面에 比重을 두고, 畜協에서도말한 바와 같이, 각종 農業技術을 개발하는 필요한 機資材, 또 生産費를 낮추는 중요한 農器具 原資材에 대한 關稅는 대폭 낮추는 政策을 포함한 合理的인 農政으로 體系를 再整備할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느낀다.

司 會;그러면 主題를 發表하셨던 許信行 博士께서 해명하실 것은 해

명하시고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시기 바란다.

許信行(農經研 農政室長);여러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 다. 오늘 저희들이 의도한 것은 어떤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거나 구체적 이 안을 확정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 분야의 정문가 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資料를 提示, 많은 토론을 誘導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처음에 의도하였더만큼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전부 收斂시켜서 앞으로의 연구에 참고토록 하겠다 아직 끝을 맺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변명이라면, 이번에는 가능하면, 農 業發展을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쪽으로는 나가지 않으려고 의도하였었다. 왜냐 하면 財務部가 關稅에 대한 實務作業을 하고 있어서 關稅政策면에 기 여를 해야겠다고 생각, 그런 면에서 논의를 해 보아야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다만, 현재 한국 농업이 갖는 특성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이다.그 리고 한국 농업이 전통적인 自給自足的 營農形態로부터 商業的 營農패턴 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과, 이를 위해서는(農經研 資料) 12페이지 "라" 번에 제시했듯이, 첫째 商業營農을 지향한 生産基盤을 造成해야 하겠고, 둘째 農水産物需給 및 價格安定裝置를 마련해야 하며, 세째 流通構造를 개 선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楊博士가 장기적인 農水産業의 綜合開發計劃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했지만, 이것이 없어서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논쟁의 초점이 여기로 집중된 나머지 關稅 문제 를 떠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약화시켰던 것이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다.

한가지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것은 楊博士의 8% 均一關稅制 제안과는 전혀 見解를 달리 한다. 그 이유는 個別産業이 가지고 있는 背景이 다르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러 財貨 가운데서도 國民이 필요로 하는 強度 가 다르기 때문에 化粧品이나 담배 같은 사치품이 쌀과 같을 수 없다. 그 다음에 生産條件이 다르다. 農業은 工業에 비하여 自然條件에 더 의존하 게 되며 勞動力의 質이 낮고, 生産物이 갖는 腐敗性이나 계절적으로 生産

되는 등 生産與件이 다르다. 또 國際市場의 歪曲이나 獨寡占性에 있어서 도 다르다. 그리고 농업이 공업분야와 똑같은 一線上에서 發展해 나가느 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농업이 공업에 비하여 20∼30년 뒤 처겼다고 본다. 또 日本, 台灣에 비해서도 우리 나라 農業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이런 개별 산업의 發展段階의 時差와 더불어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요인 에 있어서 産業間에 차이가 있어 균등하지 못한데, 이처럼 균등하지 않은 것을 전부 均等하게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더 큰 不均等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効率性이라는 하나의 자를 가지고 재면 아주 간단하고 말 하기 쉽고 鮮明하다. 大學을 졸업한 高級頭腦와 國民學校밖에 못나온 勞動者에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報酬를 받으라고 한다면 언듯 公平한것 같지만, 이들 사이에는 敎育投資와 能力에 있어서 다를 뿐만 아니라 일의 成果면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우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産 業들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8% 均一關稅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뒤쳐진 農業, 다시 말하자면 農 業이란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老人들 婦女들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産業 인데, 이러한 分野를 어떻게 공업 분야와 같은 위치에 세워 놓고 均一關 稅를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농수산업이 언제까지 自立할 수 있겠는 가, 언제까지 効率的으로 발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였는데,언제 까지라고 못박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政策變數를 고려하지 않고 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될 것이다. 왜냐 하면 그 대답은 農業 에 얼마 만큼 開發投資를 할 것이냐, 얼마 만큼 발전시킬 意志를 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조건에 따라서 20년 후도 될 수 있을 것이고,아니면 100년이나 200년 후에 가서도 못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 20년가 방치 하듯 농수산업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多數 小規模 副業農體制로, 다시 말하면 農外所得에 의존하는 日本, 台灣型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少數 精銳農體制로 나가야 되다 는 것이다. 따라서 投資를 늘려 農業을 開發, 高能率 生産體制로 전환시 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生産費를 節減하고 價格도 안정시켜야 될 것이다. 물론 농수산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輸入이 필요할 때에는 필요 최소량

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제시한 關稅政策制度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農水産業의 발전에 기대를 걸고 지속성 있게 개발시켜 나간다면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우리 농수산업 분야도 서서히 開放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때 가서 關稅를 中心稅率로 조정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司 會;楊博士께서 양해하신다면, 이만 終結을 할까 한다.

楊秀吉(開發研究院 研究委員);혼자 포위 당한 느낌이고 또 많이 배 우면서도 나는 「바람 풍」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은 「바담 풍」 했다고 들은 것 같아서 답답도 하고……. 여기서 서로 많이 배우셨다고들 하지 만 본인이 솔직히 느끼기에는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예를 들면 8% 均一關稅率은 누차 말하였지만 내 자신도 반대이다. 왜냐 하면 産業마다 特性이 다르기 때문이다. 産業別로 特性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은 제 2 단계의 本質的인 이슈가 되는 것이다. 그럼 農業에 대해서 는 8% 均一關稅率이 아니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우선 保護해 달 라 이런 입장에서 許信行 博士께서 200년 뒤에도 農業競爭力이 안 생겨 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200년 뒤에도 農業競爭力이 안생긴다면 問題이 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비젼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내 자신도 지 금 현재 農業에 대해서 保護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른다. 이것이 어 려운 課題이기 때문에 배우러 왔고, 또 내 자신 農業의 輸入을 開放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가면서도 마찬가지 상태이다. 정말 農業保護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들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뿌리까 지 손이 뻗는 이런 쪽으로 論理를 誘導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질문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고 끝 내겠다.

自給自足이 왜 安定供給을 말하는 것인가? 農業保護가 農業發展을 保障하는가? 그 다음에, 農業이 지금 현재 保護를 받고 있는가, 안받고 있는가?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關稅뿐 아니고 輸入障壁等 여러 가지로 인

해서, 이것은 처음부터 해명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國內外 價格差를 비교 한 率은 法定關稅率의 10배 20배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슈는 輸入을 開放하느냐 아하느냐 하는 것이다.내 자신 農業에 대해서 輸入을 開放해야 된다. 全面的으로 해야 된다. 당장해야 된다. 無條件 하 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무조건 다, 農業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保護하자는 것도 問題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의 흐름에서 느낀 것은 무조 건 農業은 保護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억지 같이 들릴지 모 르지만, 지금 여기서 合意는 農業은 무조건 保護해야 된다는,이것으로 들 었다. 그 다음에 70 年代末에 우리가 심각한 不況에 들어 갔는데 그 根本 原因은 한 때,不況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은 안 그렇지 않지만, 어느 정 도 勞動人力 不足狀態에 부닥쳤기 때문에 생긴 現狀이라고 생각된다. 다 시 말해서 우리가 80년대에 高度成長을 해야 된다면, 그 價值觀 자체에 도 疑問을 가져 볼 수 있지만, 農業의 지속적인 Release 가 있어야 되겠 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즉 勞動力이 말이다. 역시 지금 農業活動 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日本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日本이 65 년부터 77년 사이에 農業活動에서 工業活動으로 轉換한 人力 이 2 千 2 百萬이나 된다. 1년에 百萬名씩 工業과 서비스業으로 勞動이 供給되 것이다. 日本 이야기들 할 때 흔히들 자기 좋은 쪽만 찾는데, 技 術開發도 같이 했고 또 여러 가지 日本 特有의 構造的 特性이 있지만, 經 濟的인 現象의 하나가 勞動力이 끊임 없이 工業과 서비스業으로 供給됐다 는 것, 12년 동안에 2千2百萬이 供給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經濟効率 막이 아니라고 내 자신이 전제를 말하였는데도 자꾸 經濟効率만을 논하느 냐 해서, 왜들 그렇까 생각해 보니, 經濟論理 對 非經濟論理의 問題가 아 니고 論理 이전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 같다. 과연 우리는 論理 이전의 문 제를 論理的으로 풀 수 있을지? 論理 이전의 문제를 풀려면 論理的인 方 向을 찾는 이러한 會議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의 討論은 論 理의 테두리 안에 두자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國際貿易秩序에 대해서, 바다의 파도가 높아지니까 해안으로 빨리 도망 갈 것이냐 파도를 타고 앞 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이슈 같다. 先進國 貿易障壁 이야기를 자꾸 '하는

데 先進國이 貿易障壁을 쌓고서 先進國 經濟가 어떻게 되었는가? 유럽의 經濟가 저렇게 병든 것은 내가 보기에는, 發端은 保護貿易主義가 아니지만, 그것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保護貿易主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開放體制를 향한다는 것은 先進國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先進國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내 자신 農業을 開放하자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 다음에, 先進國 經濟政策이라는 것이 반드시 合理的으로 세워지는 것인가? 先進國內에서도 여러 利益集團들이 있어 왈가왈부하다가, 특히 民主的 節次란 그런 長短點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政策이 결정된다는 것이 반드시 合理的인 것은 아닐 것이다. 先進國이 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合理的인 것으로 여겨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許信行(農經研 農政研究室長);죄송하지만, 두 가지만 질문하겠다.

司 會;그만 하려 했는데, 2분만 드리겠다.

許信行(農經研 農政室長); 먼저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主穀 이외에 自給自足이란 말을 해본 적이 없지만, 어떤 농산물이건 自給度를 높여 가면 海外에만 의존하는 것에 비하여 국민 식량의 安定供給은 보다 쉽게 보장될 것이다. 왜냐 하면 하나의 供給源보다 두 개의 供給源을 가질 때 國民食糧供給은 더욱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農業保護만으로는 農業發展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農業發展을 크게 도와 줄 것으로기대된다. 세째, 農業은 현재 보호받는 분야와 받지 못하는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면화, 밀, 옥수수, 콩 등의 국내 생산은 몰락된 지 이미 오래이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다. 첫째, 1962년 제 1 차 5 개년 經濟開發計劃이 시작되던 해부터 20년간 輕工業내지 重化學工業분야에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분야를 保護育成해 나왔다. 어떤 분야는 過保

護되어 왔었고 지금도 過保護되고 있는 분야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농업은 이제 겨우 商業的 營農으로 발돋움하려는 幼稚段階, 즉 工業分野의 60년대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이 시점에서,工業과 함께 무차별하게 開放 또는 均一關稅制를 적용하러 드는가? 왜, 工業分野를 60년대 초기에 開放하고자 말하지 않고 20년간 保護育成한 다음, 지금에 와서 開放을 주장하는가? 거기에 어떤 論理가 있다면 왜 농업 분야에는 똑같은 論理를 적용하지 않는가?

둘째, 막상 이 시점에서 모든 분야를 開放했다고 하자. 關稅率을 0%나 8%로 예외 없이 均一하게 통일했다고 하자. 그러면 과연 어떤 분야가 먼저 쓰러져 넘어질 것인가? 工業이라고 생각하는가, 農業이라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自動車나 TV 冷藏庫 같은 工産品을 생산하는 大企業이 먼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소 한두 마리나 돼지새끼 몇 마리 또는 쌀이나 보리 채소를 생산하는 농민이 먼저 나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楊秀吉(開發研究院 研究委員);지금 당장 모든 것을 開放하면 큰 일 난다. 그런 입장을 나도 취한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취해서는 안될 이다. 그 다음에 政治基調가 60년대와 70년대는 많이 다르다. 60년대는 選別的인 産業政策이 아니었고 모든 輸出競爭力이 있는 産業은 支援해 주 는 입장을 취했는데, 그 근본 원인이 각종 輸入障壁으로 인해서 輸出業者 들이 原資材 등을 사용할 때 海外 競爭者들과 같은 條件에서 購入을 못했 기 때문이다. 그래서 輸入障壁으로 말미암은 短點을 카버해 주는 것이 60 년대 支援體制의 특징이었고, 特定産業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効果는 상 70년대에 들어와 國際經濟環境이 바뀌면서 政府가 당히 적었다. 가지를 하였다. 日本의 예를 그대로 본따서 重化學을 추진한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당시 72년도의 商品(commodity) 파동에 충격을 받아 農業保 護를 시작했다. 政策基調가 70년대에 바뀌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보았으나 70년대말에 와서 보니 잘 안되었다. 그래서 産業構造調整에 문 제가 있다. 産業支援制度가 뭔가 잘 못된 것 같다. 그래서 검토해 보자고

한 것이, 이런 政策協議會 나오게 된 背景이다.

司 會;楊 博士께 감사드린다.

오늘 關稅政策을 중심으로 해서 協議會를 개최하여 이야기를 하다 보니 農政의 基本問題로 돌아가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하는 데로 돌아 갔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귀결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한다. 오늘 여러 討議參席者 그리고 방청하신 분들, 제가 잘못 진행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읍니다만 이렇게 까지 허심탄회하게 토의해 주신데 대하여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정책자료를 만드는 데 좋은 참고가될 것으로 믿는다.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린다.

# 開 會 辭

院長 金甫炫

오늘 各界의 高名하신 專門家 여러분을 모시고 農水產物 關稅政策協議 會를 當硏究院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農業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읍니다. 農村人口의 大量流出로 農村勞賃이 급상승하고 農耕地의 감소로 地價가 오르는 등 生產費 昻騰要因이 생겨났 읍니다.

그리고 經濟發展에 따른 所得의 增大로 高級 農產物에 대한 需要가 급증하자 이들 價格이 暴騰하는 등 農產物의 需要 및 價格變動이 매우 불안해졌읍니다.

그 결과 '70 년대 하반기에 農產物 輸入이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農產 物 輸入開放論이 대두되었읍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脆弱한 生產基盤을 가지고 있는 우리 農民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을 안겨 주기도 하였읍니다.

國際貿易은 貨幣單位와 貿易政策을 달리하고 있는 國家間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國內問題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內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家間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므로 특히 農水產物의 輸入을 國民經濟發展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높은 識見을 가진 各界 專門家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읍니다.

先進諸國이 궁극적으로 自由貿易이 가지는 長點들을 인정하면서도 農業에 관한 한 각종 保護障壁들을 선뜻 철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은 그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農水產物 貿易關稅政策의 조정은 우리 나라 農業의 發展方向과 깊은 관련을 가지며 國民食糧의 安定的 供給과 物價安定과도 불가분의 관 계가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각 分野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農業을 開放 또는 保護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保護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保護對象이 되는 品目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保護를 위한 적절한 수단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바람직한 方向이 모색된다면 이는 國際收支防禦,物價安定,農業發展이라는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經濟가 轉換期에 처해 있고, 관계당국에서 關稅調整의 實務作業을 추진중인 이때 農產物輸入 및 關稅問題에 대하여 깊고 광범위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農水產物 關稅政策方向 定立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農業發展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協議會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討論參 加者 여러분과 關係機關의 政策擔當者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82. 10. 19.

### 附錄 2

# 參加者名單

### 主題發表

許信行(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政研究室長)

### 司會

金榮鎭(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委員)

### 討論參加者(가나다順)

金東熙(檀國大 教授)

金成斗(朝鮮日報 論說委員)

金成勳(中央大 教授)

金世源(서울大 教授)

金定台(韓國日報 論說委員)

朴炳鎬(外國語大 教授)

朴振根(延世大 教授)

朴振煥(農協大 學長)

潘性紈(서울大 教授)

徐箕源(農協中央會 調査部長)

申奉植(全國經濟人聯合會 專務理事)

楊秀吉(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柳南烈(畜協中央會 理事)

尹 埴(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首席研究員)

林東昇(韓國貿易協會 常務理事)

全應時(韓國飼料協會 副會長)

趙長鎬(每日經濟 論說委員)

玄英鎭(中央日報 論說委員)

# 间随

## 農水産物 關稅政策의 調整方向

1982年 11月 11日 發行

發行處:韓國農村經濟研究院

登 録: 1979年 5月 25日 第3-135호

印刷處 : 株式會社 文 苑 社

723 - 6068, 722 - 6053